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2015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016년 3월 9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변재상 (서명)

목 차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4
(1) 조직도	4
(2) 지배구조의 특징	4
(3) 지배구조 현황(요약)	6
다. 관련 규정	7
2. 이사회	8
가. 역할(권한과 책임)	8
(1) 총괄	8
(2) 구체적 역할	8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8
(나) 정관변경	9
(다) 예산 및 결산승인	10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12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12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13
(사) 내부통제 기준 수립·평가	14
(아)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14
(자) 경영승계업무	15
(차) 기타	15

나. 구성(이사)	16
(1) 총괄	16
(2) 구성원	17
(3) 요약	22
다. 활동내역	25
(1) 활동내역 개요	25
(2) 회의 개최내역	26
라. 평가	35
(1) 이사회 평가	35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36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7
가. 권한과 책임	37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37
다. 구성	38
라. 활동내역 및 평가	40
(1) 활동내역 개요	40
(2) 회의 개최내역	40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41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41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41
[후보자 1]	41
(가) 후보자 성명	41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41

① 출생연도, ② 출신학교, ③ 경력, ④ 사외이사 경력	
(다) 후보제안자	42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② 후보자와의 관계	
(라) 후보자 추천이유	43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44
(바) 자격충족 여부	44
① 소극적 요건,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④ 본인 소명	
(사) 사외이사 평가결과	47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48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49
[후보자 2]	49
(가) 후보자 성명	49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50
① 출생연도, ② 출신학교, ③ 경력, ④ 사외이사 경력	
(다) 후보제안자	50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② 후보자와의 관계	
(라) 후보자 추천이유	51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51
(바) 자격충족 여부	52
① 소극적 요건,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④ 본인 소명	
(사) 사외이사 평가결과	55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56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56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57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57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57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58
(3) 후보군 현황	58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58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59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60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60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60
(1) 일반	60
(2) 비상계획	62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63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63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63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63
① 소극적 요건,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67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67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67
(3) 후보군 현황	67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68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68
5. 감사위원회	69
가. 역할(권한과 책무)	69
(1) 총괄	69
(2) 구체적 역할	69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69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71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71
(라) 재무제표 검토 등	73
(마) 기타	74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74
(1) 총괄	74
(2) 구성원	76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6
(1) 활동내역 개요	76
(2) 회의 개최내역	77
라. 감사보조조직 등	81

6.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83
가. 권한과 책임	83
(1) 총괄	83
(2) 구체적 역할	83
(가)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84
(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84
(다)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84
(라)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제 44 조에 따른 변동 보상 대상자의 결정	85
(마) 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86
(바) 기타	86
나. 구성(보상위원회위원)	86
(1) 총괄	86
(2) 구성원	8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89
(1) 활동내역 개요	89
(2) 회의 개최내역	89
라.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90
(1) 보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90
(2) 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90
(3)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91
(4)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91

(5)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91
(6)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92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92
(8)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93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93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93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93
(1)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93
(2)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94
(3)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94
(4)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95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96
(1) 보상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96
(2) 변동보상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97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97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 도별로 구분	98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98
(6)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99
(7)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99
(8)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100
(9) 임직원 총보수	100
 7. 리스크관리위원회	 101

가. 역할(권한과 책무)	101
(1) 총괄	101
(2) 구체적 역할	101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101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101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101
(라)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102
(마) 기타	102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102
(1) 총괄	103
(2) 구성원	103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03
(1) 활동내역 개요	103
(2) 회의 개최내역	103
8. 경영위원회	114
가. 역할(권한과 책무)	114
(1) 총괄	114
(2) 구체적 역할	114
나. 구성(경영위원회위원)	115
(1) 총괄	115
(2) 구성원	11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16
(1) 활동내역 개요	116

(2) 회의 개최내역	116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121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21
(1) 사외이사 박정찬	121
(가) 소극적 자격요건	121
(나) 적극적 자격요건	121
(다) 요약	122
(2) 사외이사 홍성일	122
(가) 소극적 자격요건	122
(나) 적극적 자격요건	122
(다) 요약	123
(3) 사외이사 조래형	123
(가) 소극적 자격요건	123
(나) 적극적 자격요건	123
(다) 요약	124
(4) 사외이사 황건호	124
(가) 소극적 자격요건	124
(나) 적극적 자격요건	124
(다) 요약	125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125
(1) 사외이사 박정찬	125
(가) 활동내역	125
(나) 보수	126

(2) 사외이사 홍성일	127
(가) 활동내역	127
(나) 보수	128
(3) 사외이사 조래형	128
(가) 활동내역	128
(나) 보수	129
(4) 사외이사 황건호	130
(가) 활동내역	130
(나) 보수	131
(5) 요약	131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132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132
마. 임원책임보상보험 현황	132
바. 사외이사 평가	133
(1) 평가 개요	133
(2) 내부평가	133
(가) 내부평가 개요	133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34
① 총론,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3) 외부평가	135
(가) 외부평가 개요	135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35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136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136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136
아.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138
10. 주주총회	143
가. 주주현황	143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144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46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46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원칙]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합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영진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는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의 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정책]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지배구조 정책 및 운영실태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역할을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에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사회 안건 부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법성·공정성·사업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써 경영진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이나 이해상충 행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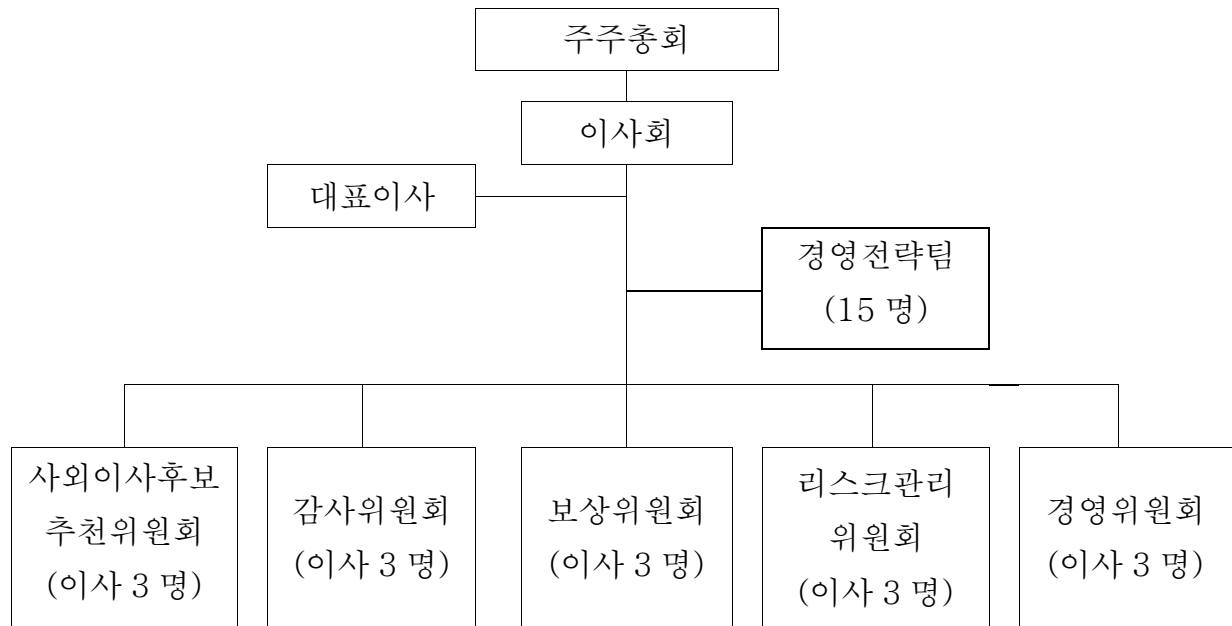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자본시장 및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다수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언론분야 경력의 사외이사도 포함시켜 이사회 심의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대한 평판 등 논의의 다양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지속적 교육 실시 및 그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구축을 통해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 및 모범규준상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회사 경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정책 및 운영실태에 대한 공개를 위해 미래에셋증권은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데, 동 보고서를 통해 i)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구성·역할·활동내역, ii) 이사의 독립성·전문성, iii) 감사제도, iv) 임원의 보수, v)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2015 사업연도 동안 i)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ii) 사외이사 활동내역, iii) FY2014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http://www.smartmiraeasset.com>)에 충실하게 공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에셋증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 및 운영실태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공시함으로써 감독 당국이나 시장의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016.3.9.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일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2015년 12월 31일 기준 총 7명의 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는 4인으로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 중 4인은 금융회사 경력, 1인은 금융감독원 경력, 1인은 금융투자협회 경력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1인은 언론분야 경력으로 이사회 심의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대한 평판 등 논의의 다양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및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각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에 본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하여 서명한 후 회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실시 여부에 대해서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신규 선임시 2년, 연임시 1년으로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위원회 등의 연임기간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총 5개의 이사회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으로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였고, 사외이사인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으로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였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홍성일 사외이사가 역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 중 이광섭 사내감사위원과 조래형 사외감사위원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서 그 업무의 효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으로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였고, 박정찬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같이 역임함으로써 보상체계에 위험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경영위원회를 이사회내위원회로 설치하여 주요 경영사항 및 업무집행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경영위원회의 내부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판단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그 심의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으로 사외 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고, 보상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 -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4/7	조용기/상임	정관 § 41, 이사회규정 § 3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2/3	조용기/상임	사외이사제도운영규정 § 9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구축 - 회사의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내부감사 계획을 수립·집행 - 내부감사 결과 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2/3	홍성일/사외	정관 § 47, 감사위원회 규정 § 3
보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 보상체계가 『금융회사 지배 	2/3	변재상/상임	보상위원회 규정 § 7

	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보상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리스크관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기능 수행 및 통제환경의 조성 -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 -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2/3	변재상/상임	리스크관리 규정 § 2-4
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 법령 및 정관상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 사항을 제외한 회사 제반 업무 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음 	-/3	조용기/상임	경영위원회 규정 § 2

다. 관련 규정

- 첨부 1. 미래에셋증권 정관
- 첨부 2. 미래에셋증권 이사회규정
- 첨부 3.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제도운영규정
- 첨부 4. 미래에셋증권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5. 미래에셋증권 보상위원회규정
- 첨부 6. 미래에셋증권 리스크관리규정
- 첨부 7. 미래에셋증권 경영위원회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건전경영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이사회규정 § 3 ②).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이사회 지원부서인 경영전략팀에서 담당하여 이사회에 경영목표·전략을 최종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받고 있습니다.

'15년 경영목표·전략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4.11월에 '15년 경영계획(환경 분석과 대응, FY2015 목표와 달성 방안) 세부내용을 부서별로 도

출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전략팀에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경영진의 검토 및 피드백 과정을 거친 후 '14.12 월에 전사 경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5.1 월 개최된 15 년도 제 1 차 이사회에서 '15 년 경영목표·전략을 보고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기본 방향	추진 전략
혁신 경영 강화	혁신 인프라 강화
	환경변화 적응력 강화
	모바일 플랫폼 선도
	연금 경쟁력 강화
고객 가치 증대	고객 만족을 위한 자산 배분
	고객수익률 관리 혁신
	AM 과 RM 의 혁신
조직간 시너지 강화	고객 중심의 토털마케팅 강화
	시너지를 통한 경쟁력 제고

이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15.4 월,' 15.7 월,' 15.10 월)를 통해 분기별 경영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진행 경과에 대한 점검을 받았으며, '16.1 월에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15 년 경영목표·전략에 대한 연간 실적 및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에 대한 최종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정관변경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상법 § 433, 이사회규정 별표 제 1 호 이사회 부의사항 제 5 호 가목).

이에 따라 '15 년 3 월 개최된 '15 년도 제 2 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정관변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정관변경 사유

이사의 퇴직급여를 정하는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권한 부여

-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내용
제45조(이사의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퇴직급여를 정하는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동 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함. - 제16기 정기주주총회(2015.03.27. 개최) 안건 제6호 의안인 임직원퇴직연금부담금적용규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함.

'15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정관변경안이 승인되었으며,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당사 내규인 임직원퇴직연금부담금적용규정 제정안이 동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이에 따른 당사 내규의 추가 개정내역은 없었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경영위원회에 예산 승인 권한을 위임하여 회사의 연간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 편성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보고된 경영목표·전략과 연계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년 예산은 '15.1월 개최된 15년도 제 1차 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15.4월 개최된 제 4차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적정성에 대해 사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별표 제 1 호 이사회 부의사항 제 6 호).

'14 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자가 '15.1 월 초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승인 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15.3 월 임시이사회(15 년도 제 2 차 이사회)에 '14 년 결산안을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최종 제출된 '14 년 결산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제16기 별도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산총계	22,089,695	영업수익	3,318,548
부채총계	19,732,674	영업이익	213,782
자본금	209,461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14,444
자본총계	2,357,021	당기순이익	149,333

○ 제16기 연결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산총계	22,671,598	영업수익	3,391,254
부채총계	20,316,268	영업이익	199,520
자본금	209,46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256,802
자본총계	2,355,330	당기순이익	182,231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자본총계	2,331,292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	180,918

○ 이익배당

- 주식배당 1주당 0.05주(주식배당률 : 5%)
- 현금배당 1주당 100원(시가배당율 : 0.21%)

'15 년 3 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결산안(배당 포함)이 승인되었으며, 현금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지급되었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회사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 3 ①).

본부신설·폐지 등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진에 위임하고 있으며, 국내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쇄,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경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상법 § 393 ①, 경영위원회규정 § 2 ③).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 역할을 위해,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는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사회는 안건 부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법성·공정성·사업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써 경영진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이나 이해상충 행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15 년도에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 대표이사 직무 대행 순위 결정, 선임사외이사 선임,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의

안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미래에셋증권은 상법 제 397 조의 2 및 이사회규정 제 9 조 제 1 항(이사회 부의사항 제 4 호 라목)에 따라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 398 조 및 이사회규정 제 9 조 제 1 항(이사회 부의사항 제 4 호 라목)에 따라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7 월 개최된 '15 년도 제 5 차 이사회에서 주요주주 등(부동산 114)과 회사 간 거래의 건에 대해 그 거래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재적이사 전원 찬성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포함)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의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 또는 용역 거래(대규모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5.4 월 개최된 제 4 차 이사회, '15.9 월 개최된 제 7 차 이사회, '15.10 월 개최된 제 8 차 이사회, '15.12 월 개최된 제 9 차 이사회에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자산운용)와의 대규모내부거래 건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8 조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내부통제기준 § 10 ①, 이사회 규정 별표 제 1 호 이사회 부의사항 5. 나.).

’15년에는 ’15.12 월에 개최된 ’15년도 제 9 차 이사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사회 역할 명시, 금융당국의 강화된 임직원자기매매 가이드라인 반영,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15.7.1)에 따른 내부통제사항 반영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정관 제 44 조 제 1 항, 이사회규정 제 1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가 경영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리스크관리규정을 사전 심의하고, 이사회는 리스크관리규정 제 2-9 조 및 이사회규정 별표 제 1 호 이사회 부의사항 제 5 호에 의거하여 리스크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최종 의결합니다.

'15년에는 '15.1월에 개최된 '15년도 제 1차 이사회, '15.9월에 개최된 '15년도 제 6차 이사회, '15.12월에 개최된 '15년도 제 10차 이사회에서 총 3차례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자) 경영승계업무

본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인 FY 2015 중에는 경영승계계획 수립·운영·평가와 관련한 이사회 활동 내역은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외 경영승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해당사항 없음

나. 구성(이사)

(1) 총괄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등기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이사회규정 § 3),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15 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7 명의 이사(대표이사 2 명, 상근감사위원 1 명, 사외이사 4 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3 월 정기주주총회에서 2 명의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되었는데, 이 중 1 명은 연임되었고 새롭게 1 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이며(정관 § 36), 연임이 가능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연임 시 임기는 1 년 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5 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정관 § 36).

이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자본시장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자본시장법 § 24 ②)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 년말 현재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투자업분야 4 인, 금융감독업분야 1 인, 벤처투자분야 1 인, 언론분야 1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는 금융투자업분야 전문가('91년부터 '98년까지 보람은행, '98년부터 '99년까지 하나은행, '99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에셋증권 재직)이면서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로 4년 이상('11년~)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조용기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12년 6월 선임되었습니다(이사회규정 § 4 ①). 일관되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 책임 경영, 이사회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해 당사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중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모범규준 § 7, 사외이사제도운영규정 § 21).

선임사외이사로는 금융투자업분야 전문가('03년부터 '07까지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이면서 우리 회사의 사외이사로 약 2년간('14년~)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홍성일 사외이사가 그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로 '15년 1월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① 이사회 의장 조용기

조용기 이사는 2011년 5월 27일 이사로 최초선임(임기만료일 2016년 3월 26일)되어 현재 55개월 간 미래에셋증권(주) 상임이사로 재임 중이며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이사는 2015 사업연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이사회 의장(당사는 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면서도 이사회 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사장)<'11~>, 미래에셋증권(주) 리테일사업부 사장<'09~'10>, 미래에셋증권(주) 법인 CM 사업부 대표<'06~'09>, 미래에셋증권(주) IB 본부장<'05~'06>, 미래에셋증권(주) CW 본부장<'02~'05>, 미래에셋증권(주) 금융상품영업본부 부장<'01~'02> 등.

② 이사 이광섭

이광섭 이사는 2008 년 5 월 30 일 이사로 최초선임(임기만료일 2016 년 3 월 26 일)되어 현재 91 개월 간 미래에셋증권(주) 상임이사로 재임 중이며 미래에셋증권(주)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광섭 이사는 2015 사업연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경영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광섭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주) 상근감사위원<'08~>, 금융감독원<'86~'08> 등.

③ 이사 변재상

변재상 이사는 2012 년 6 월 5 일 이사로 최초선임(임기만료일 2016 년 3 월 26 일)되어 42 개월 간 미래에셋증권(주) 이사로 재임 중이며 상임이사로서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변재상 이사는 2015 사업연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장,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재상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사장)〈'12.6 월~〉, 미래에셋증권(주) Retail 부문대표 〈'11.12 월~'12.6 월〉, 미래에셋증권(주) 경영서비스 부문대표〈'11.1 월~'11.12 월〉, 미래에셋증권(주) 홍보실 상무〈'09.08~'10.12 월〉, 미래에셋증권(주) HR 본부 상무〈'07.12 월~'09.08 월〉, 미래에셋증권(주) HR 본부 이사〈'06.11 월~'07.12 월〉, 미래에셋증권(주) 홍보실 이사〈'05.12 월~'06.11 월〉 등.

④ 이사 박정찬

박정찬 이사는 2013년 6월 7일 이사로 최초선임(임기만료일 2016년 3월 26일)되어 30개월 간 미래에셋증권(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며, 2015 사업연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정찬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위원〈'11~〉, 신영연구기금 이사〈'08~〉, 연합뉴스 사장 〈'09~'13〉, 연합뉴스 TV(뉴스 Y)사장 겸임〈'11~'13〉, 한국신문협회 감사 〈'09~'13〉, 연합뉴스 미디어전략담당 이사〈'06~'09〉,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05~'09〉, 연합뉴스 경영기획실장〈'06~'07〉, 관훈클럽 총무〈'05~'06〉, 연합뉴스 편집국장〈'03~'05〉 등.

⑤ 이사 홍성일

홍성일 이사는 2014년 3월 14일 이사로 최초선임(임기만료일 2016년 3월 13일)되어 21개월 간 미래에셋증권(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며, 2015 사업연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성일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GK 파트너스 부회장(비상근)〈'12.6 월~〉, 대우증권 사외이사〈'10.6 월~'12.5 월〉, IBK 증권 사외이사〈'09.6 월~'10.5 월〉,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사장)〈'03.6 월~'07.5 월〉, 한국투자신탁 대표이사〈'00.5 월~'03.5 월〉, 신 공항공속도로 대표이사〈'00.3 월~'00.5 월〉, 삼성증권 리테일 영업총괄 부사장〈'99.2 월~'00.2 월〉, 삼성증권 상품법인 및 기업금융본부장〈'96.1 월~'99.1 월〉,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92.11 월~'95.12 월〉, 삼성중공업 경영기획실장〈'91.3 월~'92.11 월〉,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감사팀장〈'78.11 월~'91.2 월〉 등.

⑥ 이사 조래형

조래형 이사는 2014 년 3 월 14 일 이사로 최초선임(임기만료일 2016 년 3 월 13 일)되어 21 개월 간 미래에셋증권(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며, 2015 사업연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래형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팬택(주) 비상임감사〈'07.4 월~〉, 팬택엔큐리텔(주) 상임감사〈'02.1 월~'07.4 월〉,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 영업본부장〈'01.1 월~'01.12 월〉,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 자금 및 투자조합 담당(CFO)〈'09~'00〉,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 강남지점장〈'97~'98〉,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 안산지점장〈'96~'97〉,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 복권기금부장〈'94~'95〉,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 자금부장〈'91~'93〉,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 광주지점장〈'88~'90〉 등.

⑦ 이사 황건호

황건호 이사는 2015 년 3 월 27 일 이사로 최초선임(임기만료일 2017 년 3 월 26 일)되어 9 개월 간 미래에셋증권(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며, 2015 사업연도 동안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건호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KB 금융지주 사외이사<'12.3 월~'15.3 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12.3 월~'14.2 월>,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09.2 월~'12.2 월>, 한국증권업협회 회장<'04.2 월~'09.1 월>, 메리츠증권(주) 대표이사(사장)<'99.10 월~'03.12 월>, 대우증권(주) 부사장<'96.3 월~'99.9 월>

(3) 요약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조웅기	상임	이사회회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미래에셋증권(주) 대표 이사(사장)<'11~>, 미래에셋증권(주) 리테 일사업부 사장 <'09~'10>, 미래에셋 증권(주) 법인 CM 사업 부 대표<'06~'09>, 미래에셋증권(주) IB 본 부장<'05~'06>, 미래 에셋증권(주) CW 본부 장<'02~'05>, 미래에 셋증권(주) 금융상품영 업본부 부장 <'01~'02>	11.5.27.	16.3.26	55 개월	경영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이광섭	상임	상근감사위원	미래에셋증권(주) 상근 감사위원<'08~>, 금 융감독원<'86~'08>	08.5.30.	16.3.26	91 개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변재상	상임	리스크관리위 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장	미래에셋증권(주) 대표 이사(사장)<'12.6 월 ~>, 미래에셋증권(주) Retail 부문대표 <'11.12 월~'12.6 월 >, 미래에셋증권(주) 경 영서비스 부문대표 <'11.1 월~'11.12 월 >, 미래에셋증권(주) 흥 보실 상무 <'09.08~'10.12 월>, 미래에셋증권(주) HR 본부 상무<'07.12 월 ~'09.08 월>, 미래에 셋증권(주) HR 본부 이 사<'06.11 월~'07.12 월>, 미래에셋증권(주) 홍보실 이사<'05.12 월~'06.11 월>	12.6.5.	16.3.26	42 개월	경영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상위원회
박정찬	사외		채외동포 정책위원회	13.6.7.	16.3.26	30 개월	리스크관리 위원회

			위원<'11~>, 신영연 구기금 이사<'08~>, 연 합뉴스 사장 <'09~'13>, 연 합뉴스 TV(뉴스 Y)사장 겸임<'11~'13>, 한 국신문협회 감사 <'09~'13>, 연합뉴 스 미디어전략담당 이사<'06~'09>, 외 교통상부 자문위원 <'05~'09>, 연합뉴 스 경영기획실장 <'06~'07>, 관훈클 럽 총무<'05~'06>, 연 합뉴스 편집국장 <'03~'05>)				보상위원회
홍성일	사외	감사위원회 위원장	GK 파트너스 부회장 (비상근)<'12.6 월 ~>, 대우증권 사외이 사<'10.6 월~'12.5 월 >, IBK 증권 사외이사 <'09.6 월~'10.5 월>, 한국 투자증권 대표이사(사장) <'03.6 월~'07.5 월>, 한국 투자신탁 대표이사<'00.5 월~'03.5 월>, 신 공 향고속도로 대표이사 <'00.3 월~'00.5 월>, 삼성 증권 리테일 영업총괄 부 사장<'99.2 월~'00.2 월>, 삼성 증권 상품법인 및 기업 금융본부장<'96.1 월 ~'99.1 월>,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92.11 월~'95.12 월>, 삼성 중공업 경영기획실장 <'91.3 월~'92.11 월 >, 삼성그룹 회장비서 실 감사팀장<'78.11 월~'91.2 월>	14.3.14.	16.3.13	21 개월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조래형	사외		팬택(주) 비상임감사 <'07.4 월~>, 팬택앤 큐리텔(주) 상임감사 <'02.1 월~'07.4 월>, 한국종합기술금융(주) KTB 영업본부장 <'01.1 월~'01.12 월 >, 한국종합기술금융 (주)KTB 자금 및 투자 조합 담당 (CFO)<'09~'00>, 한국종합기술금융(주) KTB 강남지점장 <'97~'98>, 한국중 합기술금융(주)KTB 안 산지점장<'96~'97>, 한국종합기술금융(주) KTB 복권기금부장 <'94~'95>, 한국중 합기술금융(주)KTB 자 금부장<'91~'93>, 한국종합기술금융(주) KTB 광주지점장 <'88~'90>	14.3.14.	16.3.13	21 개월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감사위원회
황건호	사외		KB 금융지주 사외이 사<'12.3 월~'15.3 월 >, 서울대학교 경영대 학 초빙교수<'12.3 월 ~'14.2 월>, 한국금융 투자협회 회장<'09.2 월~'12.2 월>, 한국증 권업협회 회장<'04.2 월~'09.1 월>, 메리츠 증권(주) 대표이사(사 장)<'99.10 월 ~'03.12 월>, 대우증 권(주) 부사장<'96.3 월 ~'99.9 월>	15.3.27	17.3.26	9 개월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5년에는 총 10 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참석율은 100%(정기이사회 100%, 임시이사회 100%)입니다. 평균 참석율이 100% 였던 전년도와 동일하게 높은 이사회 참석율을 통해 이사회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무진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5 년 중에 개최된 이사회 의 보고 및 의결안건이 수정의결이나 보류사항 등 특이사항 없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5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2015년 1월 28일(오전 10시 45분)

[안건통지일 : 2015년 1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1. 이사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1호 안건 : 제16기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나. 2호 안건 : 제16기 내부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							
다. 3호 안건 : 제16기 4분기 경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라. 4호 안건 : 제17기 경영계획 보고의 건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 상장지수증권(ETN) 발행한도 승인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 제16기 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¹⁾ : 사규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 안건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 안건 :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리스크관리규정,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 이사회규정 및 경영위원회규정 개정을 결의함

※ 노희진 이사는 2015년 1월 6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

(나) 제201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015년 3월 11일(오전 11시)

[안건통지일 : 2015년 3월 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1. 이사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1호 안건 : 제1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나. 2호 안건 : 제1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 제16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15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15년 3월 27일(오전 9시 45분)

[안건통지일 : 2015년 3월 2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1. 이사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1호 안건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기부내역 보고의 건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 『대표이사 직무』의 대 행 순위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 안건 ¹⁾ : 사규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 안건 : “미래에셋” 브랜드 사 용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보상위원회규정 및 경영위원회규정 개정을 결의함

※ 황건호 이사는 2015년 3월 27일자로 신규 선임됨

(라) 제2015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 2015년 4월 24일(오전 11시 5분)

[안건통지일 : 2015년 4월 1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1. 이사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1호 안건 : 자금세탁방지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나. 2호 안건 : 제17기 1/4분기 실적 보고의 건								
다. 3호 안건 : 제17기 1/4분기 경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¹⁾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주)가 운용하는 투자조합(미래에셋글로벌투자조합)에 투자하고자,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승인함

(마) 제2015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 2015년 7월 13일(오전 9시 10분)

[안건통지일 : 2015년 7월 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1. 이사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1호 안건 : 제17기 2/4분기 실적 보고의 건								
나. 2호 안건 : 제17기 2/4분기 경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¹⁾ : 사규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²⁾ : 주요주주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 회사채안정화펀드 인수대 상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임원급여규정 개정을 결의함
- 2) 상법 제398조 및 이사회규정 제9조 제1항(이사회 부의사항 제4호 라목)에 따라 계열회사인 부동산일일사(주)와 당사간의 거래(REPS-CRM 솔루션 사용 계약 등)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사전승인함

(바) 제2015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15년 9월 9일(오전 11시 15분)

[안건통지일 : 2015년 9월 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1. 이사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¹⁾ : 사규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 유상증자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 무상증자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을 결의함

(사) 제2015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2015년 9월 22일(오전 11시 15분)

[안건통지일 : 2015년 9월 1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1. 이사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¹⁾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²⁾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³⁾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당사가 투자하고 있는 수익증권(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28호)의 지분을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매각하고자,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수익증권(미래에셋맵스글로벌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에 투자하고자,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수익증권(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에 투자하고자,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승인함

(아) 제2015년도 제8차 정기이사회 : 2015년 10월 19일(오전 8시 50분)

[안건통지일 : 2015년 10월 1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1. 이사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1호 안건 : 제17기 3/4분기 실적 보고의 건								
나. 2호 안건 : 제17기 3/4분기 경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¹⁾ : 사규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²⁾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³⁾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임원급여규정 개정을 결의함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당사 보유 수익증권(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차이나부동산투자신탁1호)의 투자만기가 도래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승인함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수익증권(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6-2호)에 투자하고자,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승인함

(자) 제2015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 2015년 12월 9일(오전 11시 10분)

[안건통지일 : 2015년 12월 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1. 이사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1호 안건 : 미래에셋맵스프린터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6-2호 투자구조 변경 보고의 건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 제18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 제18기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상장지수증권 발행한도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 안건 :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해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 안건 ¹⁾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과 “미래에셋”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승인함

(차) 제2015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 2015년 12월 21일(오전 8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5년 12월 1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1. 이사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¹⁾ : 사규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 준법감시인 임기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 미래에셋컨소시엄의 대우 증권(주) 및 산은자산운용(주) 매각 최종입찰서류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을 결의함

라. 평가

(1) 이사회 평가

본 평가는 미래에셋증권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을 이사회내위원회에 적정하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에게 보고하여 그 심의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지난 2015 사업연도 동안 정기이사회 4 회, 임시이사회 6 회로 총 10 차례 개최되었고, 모든 이사가 이사회에 100% 참석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이사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조언 및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회사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사회 지원부서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였고, 안건에 대한 자료 설명이 경영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이사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사내이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에 차기 경영계획 수립시 설정한 정량적 목표 (사업수익 및 고객자산 순증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인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서 i) 혁신 경영 강화, ii) 고객 가치 증대, iii) 조직간 시너지 강화라는 방향성 (2015 사업연도 Agenda)에서 도출된 전략과제의 이행 정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2012 년 4 월 20 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i) 이사회 참여도 평가, ii) 자기평가, iii) 사외이사간 평가의 방식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직후 평가를 이행합니다. 직무평가 기준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요구하는 충실성·전문성·윤리성·책임성·공정성 뿐만 아니라 회사 및 그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 등이 포함됩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미래에셋증권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사외이사제도운영규정 제 3 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 9 조 및 제 14 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추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하여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미래에셋증권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정관과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에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 년 12 월 24 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5 년 1 월 28 일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중 적극적 요건으로서 충실성·전문성·윤리성·책임성·공정성을 추가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시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사외이사 재선임시 동 위원회는 매년 실시하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 지배구

조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후보 추천 내역 전반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사규의 정한 바대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있어서는 매년 초 실시한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자격 검증 및 추천을 하고, 사외이사 선임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사외이사의 선임을 최종 결의하게 됩니다.

다. 구성

미래에셋증권(주)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3 명 중 2 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금융전문가로 당사 대표이사인 조용기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前 연합뉴스 사장인 박정찬 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전문가를 만난 경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 년 3 월 27 일 이후 박정찬 이사를 대신하여 前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인 황건호 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증권업에 전문화된 사외이사 후보를 추

천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에서 금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조래형 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금융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깊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통하여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 / 비상임	現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력
조웅기	상임	위원장	'12.6.5~'16.3.26	'13년 5월 노희진·김정탁·김우평·박정찬 사외이사 후보 추천, '14년 2월 노희진·홍성일·조래형 사외이사 후보 추천 '15년 3월 박정찬·황건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박정찬	사외	위원	'13.6.7~'16.3.26	'14년 2월 노희진·홍성일·조래형 사외이사 후보 추천 '15년 3월 황건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조래형	사외	위원	'14.3.14~'16.3.13	'15년 3월 박정찬·황건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황건호	사외	위원	'15.3.27~'17.3.26	-

* 최초 선임일 기준임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미래에셋증권은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2015년 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2명의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1명의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으며 1명의 사외이사가 새로이 선임되었는데, 당사의 대표이사가 추천한 금융전문가 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2015년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참석 위원 전원의 동의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총 4명의 사외이사 중 1명의 사외이사가 새로이 선임됨에 따라 신임 사외이사 선임 비율은 25%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5년도 제 1 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5년 3월 11일 10시 45분

[안건 통지일: 2015년 3월 5일]

항목	이사 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웅기	박정찬	조래형	
1. 이사 성명	조웅기	박정찬	조래형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심의)안건				
가. 1 호안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박정찬, 황건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사외이사 후보 황건호는 2015 년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고 사외이사 후보 박정찬은 2013 년 6 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2015 년 3 월 11 일 제 17 기 1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위 2 명을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2015 년 3 월 11 일 제 17 기 2 차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5 년 3 월 27 일 개최된 FY2014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후보자 1]

(가) 후보자 성명

박정찬

(나) 후보자의 인적 사항

① 출생연도

1954 년 10 월 15 일

② 출신학교

University of Wales Journalism Master's degree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③ 경력

- 일반경력

2003 년~2005 년 前 연합뉴스 편집국장

2005 년~2006 년 前 관훈클럽 총무

2009 년~2013 년 前 한국신문협회 감사

2009 년~2013 년 前 연합뉴스 사장, 연합뉴스 TV 사장

2014 년~현재 現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초빙교수

④ 사외이사 경력

후보자 박정찬은 '13 년 6 월 최초 선임부터 이번 재선임을 위한 후보 추천 시점 까지 21 개월 간 당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이사회 참석 횟수 15 회, 참석률 100%, 이사회내위원회 참석횟수 13 회, 참석률 100%), '13 년 6 월부터 리스크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13 년 6 월부터 '15 년 3 월까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15 년 1 월부터는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주요 결정 사안

제 15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제 15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다)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 사항

성명 조용기

2012 년 6 월~현재 現 미래에셋증권(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

2011 년~현재 現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

성명 변재상(최초 선임 제안자)

2012 년 2 월~현재 現 미래에셋증권(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2012 년 6 월~현재 現 미래에셋증권(주) 보상위원회 위원장

2012 년~현재 現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

② 후보자와의 관계

조웅기 대표이사와 후보자는 당사에서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약 2 년동안 이사로 같이 근무하면서 총 15 회의 이사회를 같이 참석하였으며 회사 업무상 만남 외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2013 년 최초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제안한 변재상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와 후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박정찬은 약 2 년동안 당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총 15 회의 이사회 중 15 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는 등 높은 출석률로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감과 충실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다년간의 사외이사 경험으로 당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 전문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동 후보자는 2013 년 6 월 계열회사 경영진을 통해 언론사 사장으로서 당사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추천 받았습니다. 2013 년 5 월 22 일 제 1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동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최초 결의하였습니다.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가)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

나) 자본시장법 제 25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 조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가) 자본시장법 제 24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나) 자본시장법 제 25 조 제 5 항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미래에셋증권은 사외이사제도운영규정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다양한 분야로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관점에서 그 식견과 덕목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에도 모범기준 제 16조 제 1항 제 1호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후보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박정찬 후보자는 '78년부터 '13년까지 연합뉴스에 재직('09~'13 연합뉴스 사장 역임)하였고,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한국신문협회 감사,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 정상회의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언론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University of Wales Journalism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하였으며, '14 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초빙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지난 약 2 년간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를 성공적으로 역임하며, 증권업의 비전 제시,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으로 당사의 경영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검토해본 결과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언론분야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㉔ 직무공정성

2014 년 12 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에도 모범규준 제 16 조 제 1 항 제 2 호의 공정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14 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당사와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후보자는 약 2 년간 당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의사결정시 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액주주의 이익도 고려하여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㉕ 윤리성, 책임성

2014 년 12 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에도 모범규준 제 16 조 제 1 항 제 3 호의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10 년 서울시 문화상(언론 분야), '12 년 중앙언론문화상(신문·잡지 분야)을 받는 등 한국 언론 분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평판 또한 우수하며 외부 Reference Check 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에서 회사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㉔ 충실성

2014 년 12 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에도 모범규준 제 16 조 제 1 항 제 4 호의 충실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후보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초빙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의안 사전 검토 등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㉕ 본인 소명

당사는 '15 년에 선임된 박정찬 사외이사에 대해서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해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1 회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로 구성된 내부평가를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참여도 평가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여도(충실성)와 기타 기여사항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자기 평가와 사외이사 간 평가는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역할,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책임성, 공정성으로 구성됩니다.

박정찬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율 100%로 우수한 참여도(충실성)를 보였으며, 사외이사로서의 기본 역할에도 충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책임성, 공정성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미래에셋증권은 2015년 3월 11일 개최한 제 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정찬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한 후보 추천을 하였습니다. 박정찬 사외이사는 2013년 6월 7일 미래에셋증권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동 후보 추천 시점까지 약 2년에 걸쳐 미래에셋증권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이사회 운영 등 사외이사 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식견을 갖추었고,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복잡한 경영판단 과정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박정찬 사외이사는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심의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대한 평판 등 논의의 다양성을 더하는 등 이사회 심의에 있어 전문성 및 의사결정 관점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경영의사결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박정찬 사외이사는 2013 및 2014 사업연도 동안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참여했고, 이사회 및 동 위원회에 100%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 제 24조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박정찬 사외이사는 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요구하는 충실성·전문성·공정성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

여 2015 년 3 월 11 일 제 1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정찬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한 후보 추천을 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6 년 3 월 10 일에 FY2016 제 1 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에서도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한 후보 추천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 17 조 제 4 항을 준수하여,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후보 추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이사회 참여도 및 평가 결과 등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5 년 3 월 11 일 제 1 차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 1 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 명 중 3 명의 전원 출석 및 박정찬 위원(본인)을 제외한 위원 2 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 2]

(가) 후보자 성명

황건호

(나) 후보자의 인적 사항

① 출생연도

1951년 1월 23일

② 출신학교

럿거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③ 경력

- 일반경력

1996년 3월~1999년 9월 前 대우증권(주) 부사장

1999년 10월~2003년 12월 前 메리츠증권(주) 대표이사

2004년 2월~2009년 1월 前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2009년 2월~2012년 2월 前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2012년 3월~2014년 2월 前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2012년 3월~2015년 3월 前 KB금융지주(주) 사외이사

④ 사외이사 경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 사항

성명 변재상

2012년 2월~현재 現 미래에셋증권(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2012년 6월~현재 現 미래에셋증권(주) 보상위원회 위원장

2012년~현재 現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

② 후보자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을 제안한 변재상 대표이사과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황건호는 메리츠증권(주) 대표이사('99~'03)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09~'12)으로 종사한 자로서 금융업에 대한 넓은 안목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B 금융지주(주) 사외이사로 종사한 것으로 보아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 사외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충분한 자격이 검증되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성과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동 후보자는 계열회사 경영진을 통해 2015년 3월 금융전문가로 추천 받았습니다. 2015년 3월 11일 제 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동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최초 결의하였습니다.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가)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

나) 자본시장법 제 25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 조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가) 자본시장법 제 24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나) 자본시장법 제 25 조 제 5 항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미래에셋증권은 사외이사제도운영규정에서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회사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관점에서 그 식견과 덕목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에도 모범기준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후보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황건호 후보자는 전 한국증권업협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서 약 28년간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리더쉽,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재직 중 기획 및 국제담당 이사, 기업금융 본부장, 영업총괄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증권회사의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총괄하였으며, '99 부터 '03 까지 약 4년

간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CEO로서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04 부터 '09 까지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09 부터 '12 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업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검토해본 결과 후보자는 10 년 이상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㉔ 직무공정성

2014 년 12 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도 모범규준 제 16 조 제 1 항 제 2 호의 공정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후보 추천일 현재 재직 중인 타 근무지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이전에도 KB 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의사결정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주주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㉕ 윤리성, 책임성

2014 년 12 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도 모범규준 제 16 조 제 1 항 제 3 호의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재직 당시 평판이 우수하였으며, 책임경영을 통해 '07 에는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월간조선), '10 에는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상(중앙일보), '12 에는 다산금융상 공로상(한국경제),

매경증권인상 공로상(매일경제)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사회 등에서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의 경영이념과 장기적인 비전을 이해하고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㉔ 충실성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에도 모범규준 제 16조 제 1항 제 4호의 충실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후보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후보 추천일 현재 재직 중인 타 근무지는 없으므로,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의안 사전 검토 등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④ 본인 소명

당사는 '15년에 선임된 황건호 사외이사에 대해서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해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1회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로 구성된 내부평가를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참여도 평가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여도(충실성)와 기타 기여사항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자기 평가와 사외이사 간 평가는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역할,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책임성, 공정성으로 구성됩니다.

황건호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율 100%로 우수한 참여도(충실성)를 보였으며, 사외이사로서의 기본 역할에도 충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책임성, 공정성의 관점에서도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5년 3월 11일 제 1차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 1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FY2015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2 명이며 이 중 1 명이 연임하였으며, 평가 결과 연임한 박정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직전사업연도 이사회등 출석률	평가 여부
노희진	4년 7개월	X	100%	○
박정찬	1년 9개월	○	100%	○

※재임기간 및 참석률은 FY2015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임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미래에셋증권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와 관련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5년 1월 2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일 시행될 예정인 바, 동법 제 1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므로,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제정될 동법 시행령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 후보 관리 및 추천에 대한 제도(정관을 비롯한 관련사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미래에셋증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자 하며, 그 후보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및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충실성·전문성·윤리성·책임성·공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일 시행될 예정인 바,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제정될 동법 시행령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주주 및 임원 등 내외부의 경로를 통해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2016 사업연도 중에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 후보군 현황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 후보 관리 및 추천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 관련 보고한 내용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 후보 관리 및 추천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2016.3.9.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일 기준)
 - 부서명 : 경영전략팀
 - 조직 : 1. 지배구조 일반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 참고
 - 인원 구성 : 팀장(총괄) 1 명, 담당간부 6 명, 담당대리 5 명, 기타 직원 3 명
 - 담당업무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안건자료 등 회의자료의 구비 및 관리
 -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필요자료 수집 및 제공
 - 사외이사 후보군 자격검증 등 관리업무 지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영정보 제공 등 제반 실무지원
 -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및 사외이사 연수 실시

- 미래에셋증권은 2016 년 8 월 1 일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 후보 관리 및 추천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경영공백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관련 규제를 포함한 사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일 시행될 예정인 바, 동법 제 14 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지배구조 내부규범”)를 마련하여야 하므로,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제정될 동법 시행령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최고경영자 관련 규제를 포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6년 8월 1일 이후에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할 예정이고, 동 사규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에 두어 그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며, 동 사규의 제·개정시 이를 공시하여 지배구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미래에셋증권의 최고경영자는 자본시장법 제 24 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

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선임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동 임원의 요건에 부합함을 본인 스스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 32 조에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정함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에 있어 동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은 2016 사업연도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할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영승계 절차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또는 최고경영자의 중도 사임의 경우와 회사가 속한 시장상황 및 경영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로써 개시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이사회가 자격 검증 및 자질 평가 등의 심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기간 이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고, 최종 후보자가 등기이사일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로 선임되고, 최종 후보자가 등기이사가 아닐 경우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일 시행될 예정인 바, 동법 제 17 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므로,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제정될 동법 시행령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제도(정관을 비롯한 관련사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 비상계획

미래에셋증권은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 제 39 조 제 2 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에 2015 년 3 월 27 일 개최한 FY2015 제 3 차 이사회에서는 부문대표 중에서 직위, 위촉일(현 직위 위촉일을 말함),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부문대표가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는 등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체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는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즉,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선정부터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를 통한 최고경영자 선임까지 법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 년 8 월 1 일 시행될 예정인 바,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제정될 동법 시행령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제도(정관을 비롯한 관련사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본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인 2015 사업연도 중에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역이 없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본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인 2015 사업연도 중에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역이 없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 조(임원의 자격)

- 평가

본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인 2015 사업연도 중에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역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최고경영자인 조용기, 변재상 대표이사는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사항목	대표이사	
	조용기	변재상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 조제 1 항의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5.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6.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p>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 년(통보된 날부터 5 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 년으로 한다)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8.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 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 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 년</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9.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 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 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 년</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10.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 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 년</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 8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조치(제 8 호 가목 및 제 9 호 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미래에셋증권은 2016 년 8 월 1 일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 사규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규정대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일 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평가

본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인 2015 사업연도 중에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역이 없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일 시행될 예정인 바, 동법 제 1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므로,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제정될 동법 시행령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제도(정관을 비롯한 관련사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본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인 2015 사업연도 중에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 후보군 현황

본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인 2015 사업연도 중에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본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인 2015 사업연도 중에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이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사규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 연임 또는 변경 등의 의결사항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중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미래에셋증권의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2016.3.9.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일 기준)
 - 부서명 : 경영전략팀
 - 조직 : 1. 지배구조 일반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 참고
 - 인원 구성 : 팀장(총괄) 1명, 담당간부 6명, 담당대리 5명, 기타 직원 3명
 - 지정사유 : 미래에셋증권 경영전략팀은 지배구조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므로, 최고경영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이고 담당 인력 및 업무수행 경험 등이 충분함.

5.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미래에셋증권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위원 1 인과 독립성이 검증된 2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분야 전문가, 회계·재무분야 전문가 및 감독·검사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부의안건 중 감사위원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 의결시 관련 감사위원을 배제한 후 의결하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위원의 일상감사사항을 통해 제 17 기 중 소집된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 검토하였으며, 이사회 외에도 경영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의사록 작성 사항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심의, 확인을 실시하는 등 이사회 및 각 위원회 안건에 대한 감독 뿐 아니라 개최 결과 주요사항에 대한 확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 412)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 402).

이에 따라 '15년 1월에 소집된 제 17 기 1 차 감사위원회에서는 '제 16 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요구해 이에 내부회계관리자가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으며, '15년 3월에 소집된 제 17 기 2 차 감사위원회에서는 '주주총회 의안 검토의 건'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가격결정 기준을 재확인 하는 등 이사 및 실무자의 업무집행에 대해 감독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로부터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된 일상감사 등에 의거, 회사의 경영, 재무 및 업무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의견제시 등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해 감독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매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 § 4).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15년 1월에 소집된 제 17기 1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각 제안사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15 회계연도 이후 연속된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동 외부감사인 선임시 비감사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해 경영진에게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법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임을 명확히 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더불어 담당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외부감사 진행 경과 및 절차상 특이사항 발생 여부, 외부감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감독·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일상감사사항, 내부감사 업무 등에 대해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 16).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사항,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등의 사항에 대해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근감사위원은 매 연말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초 최초로 실시하는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이후 개최되는 정기 및 임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실시결과 보고, 감독기관 수검 결과 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17 기 중에는 '15 년 1 월 소집된 감사위원회에 '제 17 기 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으며, 이후 소집된 감사위원회와 제 18 기 1 차 감사위원회를 통해 일상감사 주요사항과 83 개 부점(6 개 해외법인 및 자회사 포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77 개 부점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 및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수검 받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내부감사 종합 결과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를 연초 최초로 실시하는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한 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근감사위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이상징후 조기 적발, 금융사고 예방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된 금융사고 예방 TF(Safe Guard)의 주축 멤버로, 매 분기 초 TF에 참여해 금융사고 예방 관련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 관련 의견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고, 또한 매 격주 단위로 상근감사위원 주재의 내부통제회의(준법감시인, CRO 참석)를 개최하여 회사 내 전반적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현황을 통할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 감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 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 7)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6 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 1 주 전까지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 § 447 의 3, 542 의 12)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내부회계관리규정 § 9, 12)

감사위원회는 제 16 기 내부감사 결과에 대해 '15 년 1 월 소집된 제 17 기 1 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현황과 주요 위규·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보고받아 의결한 후 이를 '15 년 1 월에 소집된 제 17 기 1 차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제 17 기 내부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6 년 1 월 소집된 제 18 기 1 차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받아 제 18 기 1 차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는 제 16 기 연간 재무제표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15 년 1 월에 소집된 제 17 기 1 차 감사위원회를 통해 그 주요사항을 보고받아 검토하였으며, 제 16 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와 영업보고서, 제 16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는 '15 년 3 월에 소집된 제 17 기 2 차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자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동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 17 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상근감사위원이 '15 년 8 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있으며, 연간보고서와 영업보고서, 제 17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16년 3월에 소집예정인 제 18기 2차 감사위원회를 통해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연간 검사계획과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 18).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15년 1월 소집된 제 17기 1차 감사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제 17기 연간 준법감시 계획 및 제 16기 연간 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이행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매 분기별 컴플라이언스 업무보고를 통해 분기별 내부통제 활동내역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매 격주 상근감사위원이 주재하는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기준에 의거 실시한 점검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회사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일상감사 사항으로 보고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상법 § 415의 2),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상법 § 542 의 11)

또한 상근감사위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되지 못하며(상법 § 542 의 8), 이외에도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 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될 수 없습니다

(상법 § 542 의 10).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미래에셋증권의 감사위원회위원은 '14 년 3 월 개최된 제 15 기 주주총회일 이후 홍성일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조래형 사외이사와 이광섭 상근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기 감사위원회위원은 모두 자본시장법과 상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조래형 사외이사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 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홍성일	사외	위원장	14.3.14	16.3.13
조래형	사외	위원	14.3.14	16.3.13
이광섭	상임(상근)	상근감사위원	08.5.30	16.3.26

* 최초 선임일 기준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5년에는 총 7회의 감사위원회(정기 4회, 임시 3회)가 소집되었고, 감사위원의 참석율은 100%로 실질적이고 원활한 감사위원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 2015 년도 제 1 차 정기감사위원회 : '15.1.28(9:30~10:30)

[안건 통지일 : '15.1.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조래형	이광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내부 감사부서장 임명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제 16 기 내부감사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제 17 기 감사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 호안건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제16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이행관련 사항 보고의 건
- 제17기 연간 준법감시 계획 보고의 건
- 제16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의 건
-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의 건
- 종합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수시감사 결과 보고의 건
- 감독기관 수검 결과 보고의 건

(나) 제 2015 년도 제 2 차 임시감사위원회 : '15.3.11(10:10~10:45)

[안건 통지일 : '15.3.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조래형	이광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주주총회 의안 검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 호안건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작성,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다) 제 2015 년도 제 3 차 임시감사위원회 : '15.3.27(10:20~10:50)

[안건 통지일 : '15.3.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조래형	이광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순위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 2015 년도 제 4 차 정기감사위원회 : '15.4.24(10:30~11:00)

[안건 통지일 : '15.4.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조래형	이광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비고

1) 보고안건

-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의 건
- 종합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수시감사 결과 보고의 건
- 감독기관 수검 결과 보고의 건

(마) 제 2015 년도 제 5 차 정기감사위원회 : '15.7.13(08:40~09:10)

[안건 통지일 : '15.7.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조래형	이광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비고

1) 보고안건

-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의 건
- 종합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수시감사 결과 보고의 건
- 감독기관 수검 결과 보고의 건

(바) 제 2015 년도 제 6 차 정기감사위원회 : '15.10.19(10:00~10:30)

[안건 통지일 : '15.10.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조래형	이광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비고

1) 보고안건

-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의 건
- 종합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수시감사 결과 보고의 건
- 감독기관 수검 결과 보고의 건

(사) 제 2015 년도 제 7 차 임시감사위원회 : '15.12.9(10:30~11:00)

[안건 통지일 : '15.1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조래형	이광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심의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5.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비고

1) 심의안건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감사보조조직을 둘 수 있으며(감사위원회규정 § 20), 감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 4, 14).

감사보조조직으로는 감사위원회 예하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감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실은 감사실장 외 감사팀 9명, 상시감사팀 8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보조조직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이에 근거하여 종합감사, 수시감사 및 기획테마감사, 상시감사 등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와 감독기관 수검 결과 등을 수시로 상근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매 감사위원회 개최시마다 상근감사위원회에 보고된 감사 결과 등을 취합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활동 외 감사 관련 기획업무, 금융감독기관과 관련한 업무 및 감사실이 연계된 부수적 업무 내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그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상근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6.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는 보상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상위원회 하위 규정으로서 『성과보상 이연제도 시행세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 15 조 제 3 항을 근거로 하여 2010년 3월 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 제 22 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홍성일 위원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2년이 되고, 박정찬 위원은 재임기간이 1년 이 됩니다.

또한 『보상위원회규정』 제 11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 개최된 제 17기 1차 보상위원회와, 2015년 3월 27일 개최된 제 17기 2차 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경영진, 특정직원에 대한 정의와 변동보상액 중 이연지급 비율, 이연지급기간, 이연지급액환수 등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 변동보상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를 이연지급하며, 변동보상의 평균 이연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및 고액 변동보상 대상자(해당 사업연도 성과급 누계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자)는 변동보상 총액의 60%를 이연지급 하였습니다.

(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 개최된 제 17기 1차 보상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영진과 특정직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상 지급, 보상체계 재조정 등 모범기준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 개최된 제 17기 1차 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상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상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제 44 조에 따른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정』 제 7 조에 보상위원회에서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 3월 27일 개최된 제 17기 2차 보상위원회에서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등기임원, 그리고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경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자를 경영진으로 결정하였고,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로서, 당사 채권영업 및 운용본부 · FICC 본부 · 파생상품본부 · Equity Trading 본부 · 전략트레이딩본부 · 기업금융본부 · 프로젝트금융 1 본부 · 프로젝트금융 2 본부의 모든 임직원을 특정직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2015년 12월말 기준 경영진 등은 대표이사 2명, 감사위원 1명, 부문대표 8명 등 총 11명이며, 특정직원은 총 145명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경영진 등	11	대표이사, 부문대표 등
특정직원	145	운용 및 IB 부문 인력

(마) 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은 한국에 있는 당사 내 모든 조직(8 부문 4 센터 31 본부 3 실 93 팀 76 지점)에 적용되지만, 해외 자회사 등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 기타

해당사항 없음

나. 구성(보상위원회위원)

(1) 총괄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이사회 규정 제 15 조 2 항에 의거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보상위원회 규정 제 4 조에 의거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1 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 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총 3 인(변재상,홍성일,박정찬)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 인(홍성일,박정찬)의 위원이 사외이사로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홍성일 이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대표이사를 역임 하였으며, 박정찬 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보상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정찬 이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2015 년 1 월 이전까지는 노희진 이사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 년 1 월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금융회 사 등 출신여 부	약력
변재상	이사	사내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現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노희진	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무	現 한국재무관리 학회 부회장 現 금융위원회 자 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前 대우증권 사외 이사겸 감사위원 장 前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홍성일	이사	사외이사	유	現 GK 파트너스 부회장(비상근) 前 한국투자신탁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2015년 1월 이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금융회 사 등 출신여 부	약력
변재상	이사	사내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現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홍성일	이사	사외이사	유	現 GK 파트너스 부회장(비상근) 前 한국투자신탁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박정찬	이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무	現 고려대 미디어 학부 초빙교수 前 연합뉴스 사장 前 외교통상부 자 문위원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변재상	상임	위원장	2012.06.05	2016.03.26
홍성일	사외	위원	2014.03.14	2016.03.13
노희진	사외	위원	2013.06.07	2015.01.06
박정찬	사외	위원	2015.01.28	2016.03.26

* 최초 선임일 기준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에는 총 2회의 보상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3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변동보상 및 이연대상자를 결정하였고, 성과급 집행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당사 성과보상제도가 회사의 재무상황,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설계 및 운영되는지 평가 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제 2015년도 제 1 차 보상위원회 : 2015년 03월 11일(수) 오전 09시 35분
[안건 통지일 : 2015년 03월 09일(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홍성일	박정찬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성과급 지급제도 심의의 건	동의	동의	동의	가결

1)제 16기 성과급 집행액 보고의 건, 제 16기 성과급 이연현황 보고의 건

(나)제 2015 년도 제 2 차 보상위원회 : 2015 년 03 월 27 일(금) 오전 11 시 10 분
 [안건 통지일 : 2015 년 03 월 23 일(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홍성일	박정찬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성과급 지급제도 심의 의 건	동의	동의	동의	가결

1) 변동보상 및 이연대상자 결정의 건, 성과보상 이연제도 수립의 건

라.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1) 보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당사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성과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종합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상위원회 규정』 제 7 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업무의 부서장을 간사로 두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당사 보상위원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현재 변재상 대표이사) 또는 2 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회의일 3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5 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 년도 결의사항 중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3)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2015 사업연도 중 보상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4)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보상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4 차례(2011 년 08 월 02 일, 2012 년 06 월 05 일, 2013 년 02 월 27 일, 2015 년 03 월 27 일)이연제도 적용 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4 기 2 차 보상위원회(2013 년 2 월 27 일)에서 대표이사 및 고액성과급 대상자의 이연금액이 증가하도록 이연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5)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당사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리스크관리본부이며, 준법감시 부서는 컴플라이언스본부입니다. 2015 년 12 월말 기준 각각 19 명, 22 명(변호사 4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본부의 경우 해당 업무 평균근속 연수는 2년 7개월, 컴플라이언스본부의 경우 3년 6개월로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인원수	비고
리스크관리본부	19명	-
컴플라이언스본부	22명	-

(6)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당사는 영업부서와 후선부서의 성과급 제도를 분리운영하고 있고(영업부서-영업 성과급, 후선부서-경영성과급), 리스크관리·준법감시 부서는 경영성과급이 지급됩니다. 경영성과급은 특정 영업부서 실적과 상관없이 회사전체 ROE, 최근년도 인별 지급규모 추이,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준법감시 부서의 성과급은 감시대상 부서의 실적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 결의 대상이 되는 경영진 및 특정직원이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8)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직원의 도전 의식 고취를 위해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특정직원 외에 일반 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문 손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1)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당사 성과보상체계 설계시 고려되는 주요 리스크는 PI 투자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입니다.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특정부서 임직원의 보상결정시 거래상대방 및 투자물건의 신용도, 투자형태 및 장단기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인 자금비용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상과 리스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보상 체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보상위원회에서 결정된 특정직원은 해당 부서의 리스크가 반영된 재무적 성과에 기초하여 부서별 보상액을 결정한 후 부서별 보상액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장이 업무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직원에게 개인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정직원의 경우 소속 부서 성과급의 일정비율을 유보하여 분기별 이익 변동성(성과미달 및 손실 포함)에 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령이나 규정, 사규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위원회(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연된 변동보상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①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변동보상액 중 35%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주식 또는 주가를 반영한 현금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이연된 보상액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정책

변동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법령이나 규정, 사규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위원회(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연된 변동보상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변동보상액 결정시 이연보상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직전 4개분기 당사 거래소 종가의 단순평균에 따라 변동됩니다.

(4)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①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변동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변동보상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등)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 및 주식(주가를 반영한 현금 포함)으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변동보상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보상액 중 이연하지 않고 즉시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연되는 금액은 주식(주가를 반영한 현금 포함)으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④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과 특정직원은 해당 사업연도 성과급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를 3년간 이연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및 고액 성과급 대상자는 해당 성과급 총액의 60%를 이연하고 있습니다.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1)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 1)}	고정보상액 ^{주 2)}	변동보상액 ^{주 3)}	
				이연지급 대상 ^{주 4)}	
전년도 (2014 년)	경영진	9	20	46.4	24.8
	특정직원	144	91.6	124.9	32.3
당해년도 (2015 년)	경영진	11	22	34.0	15.7
	특정직원	145	95.2	123.8	35.2

주 1) 수급자수 : 당사 성과급 지급 대상자 중 경영진/특정직원으로 분류된 인원 수 (성과급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인원 전체를 작성함)

주 2) 고정보상액 : 2015.01.01 ~ 2015.12.31 기간 내 수급자의 급여, 복리후생 성급여(의료비지원, 학자금)등의 합계액

주 3) 변동보상액 : 2015.03 ~ 2016.01 기간 내 지급 된 경영진, 특정직원의 성과급 총액을 기재함. (2015 회계연도에 속하는 성과급 금액을 기재함)
(성과급이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고정보상액, 변동보상액에 해당금액을 기재함)

주 4) 이연지급 대상 : 해당연도 경영진/특정직원 중 이연이 발생 된 금액을 기재함

(2) 변동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변동보상액 ^{주 1)}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주 2)}	기타	
전년도 (2014 년)	경영진	46.4	21.6	-	24.8	-
	특정직원	124.9	124.9	-	-	-
당해년도 (2015 년)	경영진	34.0	18.3	-	15.7	-
	특정직원	123.8	123.8	-	-	-

주 1) 변동보상액 : 2015.03 ~ 2016.01 기간 내 지급 된 경영진, 특정직원의 성과급 총액을 기재함. (2015 회계연도에 속하는 성과급 금액을 기재함)

주 2) 주식연계상품: 주식으로 이연되는 성과급의 합계액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4 년)	경영진	35.6	-	35.6
	특정직원	48.6	-	48.6
당해년도 (2015 년)	경영진	37.5	-	37.5
	특정직원	63.6	-	63.6

주 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금액

주 2) 해당연도 말 기준 누적된 금액 중 지급된 금액을 '지급확정' 으로, 지급시기가 미도래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전년도 (2014 년)	경영진	35.6	28.7	3.0	3.8	-	-
	특정직원	48.6	32.3	10.1	6.1	-	-
당해년도 (2015 년)	경영진	37.5	15.1	16.2	6.2	-	-
	특정직원	63.6	26.1	23.5	14.1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축소액 ^{주1)}			
		주가변동 반영	성과평가 등 반영	기타 환수금액	
전년도 (2014 년)	경영진	-0.32	-0.32	-	-
	특정직원	-1.71	-1.71	-	-
당해년도 (2015 년)	경영진	-1.99	-1.99	-	-
	특정직원	-2.68	-2.68	-	-

주 1) 당사 이연 성과급 지급 시 주가 변동으로(이연시기보다 지급시기 주가가 상승) 이연보상액이 확대되어 -로 표기함

(6)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주) 해당사항 없음

(7)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주) 해당사항 없음

(8)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상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주) 해당사항 없음

(9)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14년)	1,336	2,568	0.52	1,787	0.74
당해년도 (2015년)	1,525 (예상)	2,261	0.67	1,801	0.84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전년도 : 2014.01~2014.12
- 당해년도 : 2015.01~2015.12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해당 사업년도 기준 금액임

- 전년도 : 2014.01~2014.12
- 당해년도 : 2015.01~2015.12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표이사와 함께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노출을 견제하고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합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당사의 리스크 성향 정도에 맞는 가용자본에 따른 위험자본 수준을 정하여 각 부문별, 사업영역별로 위험자본을 배정합니다. 이때 위험자본 사용대비 수익성 달성 여부를 감안하여 배정합니다. 당사는 위험수준을 최소 NCR 유지 비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당사 전체의 위험자본 수준 안에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한도와 손실한도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서별 또는 사업영역별로 나누어 지며 규모가 큰 투자자의 경우는 더별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매 회계년도 말에 차기에 대한 전사 위험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6년 한도 배분은 '15. 12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라)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당사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업무별, 요인별리스크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하위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기대응방안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명의 사외이사과 대표이사 1명의 사내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50% 이상으로 내외부 인사의 구성 및 대표이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총괄

'15 년말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모두 3 명의 이사(1 명의 대표이사, 2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3 월 이사회에서 1 명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변재상	상임	대표이사	11.5.27	16.3.26
박정찬	사외	사외이사	13.6.7	16.3.26
황건호	사외	사외이사	15.3.27	17.3.26

* 최초 선임일 기준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5 년에는 총 10 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참석율은 100%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결안건 21 건, 보고안건 4 건이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 2015 년도 제 1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01.28 오전 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5.01.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변재상	박정찬	황건호	
1. 위원 성명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순자본비율 조기적용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Book 한도 신설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리스크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위기상황 대책점검(Contingency Plan)보고의 건, CRO 한도 변경내역 보고의 건,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활동현황 보고의 건 총 3건의 보고안건이 있었습니다.
- 2)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지표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투자여력 확보를 위하여 순자본비율을 조기적용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 3)경쟁력 있는 원금보장형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장외파생 ELB/DLB 북을 신설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금리델타 한도를 신설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 외 ETN 북, 전략트레이딩 북, 지점매출채권 북, CDS Hedge 북, 투자 PI 한도를 신설 및 변경하는 건입니다.
- 4)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의 명칭을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이관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 조항을 개정하는 건입니다.

(나) 제 2015 년도 제 2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03.11 오전 9 시

[안전 통지일 : 2015.03.0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박정찬	황건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Book 한도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인도네시아 한도 증액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저금리 기조로 단기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주가상승에 따른 주식매도로 예수금이 증가하여 RP 잔고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RP Book 한도를 증액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 2)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에 기반하여 투자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한도를 증액하는 건입니다.

(다) 제 2015 년도 제 3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03.27 오전 10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5.03.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박정찬	황건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Book 한도신설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유동성리스크 한도신설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전략을 자유롭게 선택 실행하여 운용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트레이딩 북 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 외 파생상품 북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2)실질적인 유동성위험에 대한 단기복원력을 측정할 수 있는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도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LCR 을 통해 감내 가능한 범위내의 단기차입한도를 재설정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한도신설 및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라) 제 2015 년도 제 4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04.24 오전 10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5.04.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박정찬	황건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Book 한도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유동성리스크 한도변경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개혁안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에 대한 규제가 해제 되었고, 최근 주가지수의 상승으로 투자심리가 상승하여 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증대 및 고객서비스를 위해 총 대출비율(신용공여) 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 외 전략트레이딩 북 한도 변경 및 MS, 차익거래 북을 폐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담보대출, 채권매입 증가 등에 따라 단기차입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마) 제 2015 년도 제 5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05.20 오전 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5.05.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박정찬	황건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Book 한도 신설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C 사 유상증자(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2,000 억원 총액인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다양한 Equity 매매전략을 통한 수익다변화를 창출하고 IPO 청약, Block-Deal, 메자닌 차익거래 등을 진행하고자 장외파생 MS 복을 신설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2) C 사가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로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2,000 억원 총액인수를 진행하는 건입니다.

(바) 제 2015 년도 제 6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07.13 오전 8 시 45 분

[안건 통지일 : 2015.07.0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박정찬	황건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Book 한도 신설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 및 강달러 예상에 따른 수익창출 기회가 포착되고 있고, 미국채선물 매매를 통해 해외 이벤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트레이딩 북 환율델타 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 제 2015 년도 제 7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09.09 오전 10 시 05 분

[안건 통지일 : 2015.09.0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박정찬	황건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Book 한도 신설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리스크한도 설정 권한 위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³⁾ 인수 및 투자업무 승인 절차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국내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새로운 수익창출을 노리고 하반기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와 달러 강세를 예상하여 환율 관련 상품의 트레이딩을 확대하고자 채권 Prop 북 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 외 전략트레이딩 북, 솔루션 북, 장외파생 MS 북, 장외파생(ELS) 북 한도를 신설 및 변경하는 건입니다.
- 2) 시장상황 변화와 다양한 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부한도에 대한 변경 및 신설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진행과 적시성을 높이고자 북별 세부 리스크한도 설정 권한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로 위임하고자 상정한 건입니다.
- 3) '인수 및 투자 업무' 관련 승인절차에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를 추가하여 신속하고 세분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별 리스크관리지침을 개정하고자 상정한 건입니다.

(아) 제 2015 년도 제 8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09.22 오전 10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15.09.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박정찬	황건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미래에셋맵스글로벌사 모부동산투자신탁 1 호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전사 Stress Test 한도 변 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인수규정 등에 관한 리스크관리방안 보고의 건 총 1 건의 보고안건이 있었습니
다.
- 2)미래에셋맵스글로벌사모부동산투자신탁 1 호에 (폐쇄형, 사모형) 투자하고자 하
는 건입니다.
- 3)사업 확장 속도가 급격히 확대되고 운용부서의 경영목표 또한 높아짐에 따라
자산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위험선호 성향을 재설정하고 리스크
관리하고자 전사 Stress Test 한도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자) 제 2015 년도 제 9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10.19 오전 8 시

[안전 통지일 : 2015.10.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박정찬	황건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미래에셋 맵스프런티어 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 탁 6-2 호 124 백만달러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미래에셋 맵스프런티어 사모차이나부동산투자 신탁 1 호 382 억원 만기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미래에셋 맵스프런티어 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 6-2 호에 124 백만달러를 투자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미래에셋 맵스프런티어 사모차이나부동산투자신탁 1 호에 382 억원을 만기 연장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차) 제 2015 년도 제 10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12.09 오전 10 시 10 분

[안건 통지일 : 2015.12.0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재상	박정찬	황건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제 17 기 전사한도의 적정성 검토 및 제 18 기 전사한도 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제 17 기 한도변경 및 초과내역을 보고하고, 제 18 기 각 본부의 경영목표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시장리스크 한도, 신용리스크 한도, 국가별한도, 유동성한도 등을 재배정 하는 건입니다.

2)파생상품을 포함한 각종 금융상품의 적정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가치평가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리스크관리규정을 개정안을 상정한 건입니다.

8. 경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미래에셋증권(주) 경영위원회는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는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경영위원회는 관계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결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제외한 회사 제반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행사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2 인과 상근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혁신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함께 고객과 주주에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당사 경영위원회는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합니다(경영위원회 규정 별표 1 경영위원회 부의사항 제 2 호).

이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15 년에 총 10 회에 걸친 경영위원회를 개최 하였고 15 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 17 기 예산(안) 승인(1 차)의 건, 부문대표 선임(2 차)의 건, 기관운영자금대출 한도 증액(4 차)의 건, 미래에셋증권(홍콩)의 미래에셋증권(베트남) 지분 인수(8 차)의 건 등이 있습니다.

(나) 기타 사규에 의하여 경영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당사 경영위원회는 기타 사규에 의하여 경영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합니다(경영위원회 규정 별표 1 경영위원회 부의사항 제 3 호).

나. 구성(경영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적시에 최선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웅기 대표이사를 경영위원회 위원장에 변재상 대표이사를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두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능과 회사의 준법 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이광섭 상근감사위원을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경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조웅기	상임	위원장, 대표이사	11.5.27	16.3.26
변재상	상임	대표이사	12.6.5	16.3.26
이광섭	상임	상근감사위원	08.5.30	16.3.26

* 최초 선임일 기준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15 년에 총 10 회의 경영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이사의 참석률은 100%로 경영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제 1 차 경영위원회에서 '15 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을 시작으로 부문별 경영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제 3 차 경영위원회에서 '부문대표 선임의 건' 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당사의 부문별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회사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경영위원회를 통해 지점 신설·통합·이전·명칭변경을 의결하였고, 지점의 지배인 선임 및 해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 2015 년도 제 1 차 경영위원회: 2015 년 1 월 14 일(오후 2 시 30 분)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제 17 기 예산(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2 호안건 지배인 선임 및 해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 2015 년도 제 2 차 경영위원회: 2015 년 3 월 27 일(오전 11 시 30 분)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부문대표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 2015 년도 제 3 차 경영위원회: 2015 년 5 월 12 일(오후 2 시)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지점 이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 2015 년도 제 4 차 경영위원회: 2015 년 6 월 25 일(오후 5 시)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한국증권금융 기관운영자금대출 한도 증액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2 호안건 지점 이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 2015 년도 제 5 차 경영위원회: 2015 년 7 월 14 일(오후 5 시)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계열회사간 위임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 2015 년도 제 6 차 경영위원회: 2015 년 7 월 30 일(오후 4 시)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의 미래에셋증권(미국) 증자 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 2015 년도 제 7 차 경영위원회: 2015 년 8 월 21 일(오후 5 시 30 분)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지점 이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 2015 년도 제 8 차 경영위원회: 2015 년 9 월 15 일(오전 10 시)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미래에셋증권(홍콩)의 미래에셋증권(베트남) 지분 인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제 2015 년도 제 9 차 경영위원회: 2015 년 10 월 7 일(오후 4 시)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지점 신설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2 호안건 지배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3 호안건 지점 이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제 2015 년도 제 10 차 경영위원회: 2015 년 12 월 3 일(오전 10 시)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웅기	변재상	이광섭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지점 이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1 호안건 지점 명칭 변경의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경영위원회는 복잡한 경영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 전원의 동의로 소집 절차를 생략함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박정찬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박정찬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자본시장법 제 25 조 제 5 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박정찬 사외이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사외이사제도운영규정에 따른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자본시장법 제24조		
나.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경험을 보유함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
다. 윤리책임성	충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노력을 기울임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안전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충실함

(2) 사외이사 홍성일

(가) 소극적 자격요건

홍성일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자본시장법 제 25 조 제 5 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홍성일 사외이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사외이사제도운영규정에 따른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자본시장법 제24조		
나.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함
나. 직무공정성	충족	회사의 의사결정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함
다. 윤리책임성	충족	회사의 경영이념과 장기적인 비전을 이해함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이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함

(3) 사외이사 조래형

(가) 소극적 자격요건

조래형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자본시장법 제 25 조 제 5 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조래형 사외이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사외이사제도운영규정에 따른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자본시장법 제24조		
나.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함
나. 직무공정성	충족	경영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인자 및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
다. 윤리책임성	충족	회사의 물적, 인적 구조와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동향을 이해함
라. 충실성	충족	성실히 회의에 참석하며,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함

(4) 사외이사 황건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황건호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제 24 조 및 자본시장법 제 25 조 제 5 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황건호 사외이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사외이사제도운영규정에 따른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자본시장법 제24조		
나.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함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의사결정시 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액주주의 이익도 고려하여 반영함
다. 윤리책임성	충족	회사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함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1) 사외이사 박정찬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박정찬은 '15 년 중 이사회 10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10 회, 보상위원회 2 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회 등 '15 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15.9.9 일 심의 의결한 리스크한도 설정 권한 위임의 건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와 구성이 사내임직원으로만 구성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리스크한도를 판단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경영진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사내임직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한도결정 권한은 각사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도를 판단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15.12.9 일 심의 의결한 제 17 기 전사한도의 적정성 검토 및 제 18 기 전사한도 배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인 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화 보다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리스크관리본부의 역할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박정찬은 '15 년 중 회의 참석을 위해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각 회차 별 평균 1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안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검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8,000,000	기본금+상여금+기타 수당
	기본금	48,000,000	월 400 만원 활동비지급
	상여금	-	-
	기타 수당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2) 사외이사 홍성일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홍성일은 '15 년 중 이사회 10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1 회, 감사위원회 7 회 및 보상위원회 2 회 등 '15 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15.4.24 일 보고한 감독기관 수검 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예방적 감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와 금융사고 위험 요인 등에 대해 사전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더불어 차기 감사위원회부터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한 감사 수행결과 보고 뿐 아니라 금융시장 주요 이슈와 감사활동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15.10.19 일 보고한 감독기관 수검 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감독기관 검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평소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감사실장은 평소 수시감사와 기획·테마 점검 등을 통해 감독당국 동향 및 금융시장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 '15.3.11 일 개최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인도네시아 한도 증액의 건과 관련하여 해외 투자 측면에서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이에 대해 고금리와 과세에 이점이 되는 브라질 국채 투자의 특성상, 고객이 브라질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홍성일은 '15 년 중 회의 참석을 위해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각 회차별 평균 1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검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8,000,000	기본금+상여금+기타 수당
	기본금	48,000,000	월 400 만원 활동비지급
	상여금	-	-
	기타 수당	-	-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3) 사외이사 조래형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조래형은 '15 년 중 이사회 10 회, 감사위원회 7 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회 등 '15 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15.1.28 일 보고한 제 17 기 연간 준법감시 계획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신규상품 개발 및 출시, PF 투자 등과 관련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시스템적으로 법적 이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15.12.9 일 심의 의결한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과 관련하여 금번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요구하며, 제 임직원이 동 개정사

항을 명확히 숙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전과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대해 준법감시인은 개정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두로 설명하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이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조래형은 '15 년 중 회의 참석을 위해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각 회차별 평균 1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안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검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8,000,000	기본금+상여금+기타 수당
	기본금	48,000,000	월 400 만원 활동비지급
	상여금	-	-
	기타 수당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4) 사외이사 황건호

(가) 활동내역

사외이사 황건호는 '15년 3월 신규 선임일 이후 이사회 8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8회 등 '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 '15.4.24 일 심의 의결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주)가 운용하는 투자조합에 투자)과 관련하여 기존 미래에셋벤처투자(주)의 투자조합 실적에 대해 질의(경영혁신본부장은 미래에셋벤처투자(주)의 투자 종목별 손익현황 및 미래에셋증권이 과거에 투자한 투자 건들의 내역 및 운용수익에 대해 구두로 설명함)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15.9.9 일 심의 의결한 리스크한도 설정 권한 위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은 리스크관리부서와 현업에서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되, 리스크관리의 큰 원칙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황건호는 '15년 중 회의 참석을 위해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각 회차별 평균 1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검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6,667,000	기본금+상여금+기타 수당
	기본금	36,667,000	월 400 만원 활동비지급
	상여금	-	-
	기타 수당	-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5) 요약

구분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시간
			경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명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실적
박정찬	10	10	참석대상 아님	10	10	참석대상 아님		2	2	1	1	-	
홍성일	10	10		1	1	7	7	2	2	참석대상 아님		-	
조래형	10	10		참석대상 아님		7	7	참석대상 아님		1	1	-	
황건호	8	8		8	8	참석대상 아님		참석대상 아님		참석대상 아님		-	

※ 황건호 이사는 2015년 3월 27일자로 신규 선임됨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사외이사 성명	박정찬	홍성일	조래형	황건호
1. 교육 · 연수 실시 내역	-			
가. 교육 ·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5년 1월 28일 - 내용 : 순자본비율 개정안 (시행 배경 및 타당성 검토)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
2. 누적 교육 시간	총 2시간	총 2시간	총 2시간	-

※ ‘1. 교육 · 연수 실시 내역’ 은 FY2015 기준이며, ‘2. 누적 교육 시간’ 은 당사의 사외이사로 취임 후 참석한 교육 · 연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임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당사는 법상 사외이사가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회사에 대하여 기부금 등을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다.

마. 임원책임보상보험 현황

임원이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의 의무위반, 과실 및 기타 행위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업무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도 동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도적인 행위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동 보험계약의 적용(가입)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고(1년 단위 갱신), 보상한도액은 청구 건당 한도 50억원, 총 보상한도액 5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간 보험료는 68,229,000원입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미래에셋증권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신규 선임 시 2 년, 연임 시 1 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 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 등의 내부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관점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1 회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에 의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 참여도 평가(40%), 자기 평가(40%), 사외이사 간 평가(20%)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참여도 평가는 사외이사별로 이사회 및 위원회 참여도(충실성)와 기타 기여사항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집니다.

자기 평가와 사외이사 간 평가의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기본역할(주주 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문성(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이해도(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준비와 이해는 충실한지 여부 등), 윤리성·책임성(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

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공정성(의사결정시 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평가 절차** : 이사회 참여도 평가는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며, 자기 평가 및 사외이사 간 평가는 사외이사별로 작성한 평가서를 통해 평가에 반영합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당사는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 제고 장치(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15년도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에 대해서 평가 기준에 따라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평가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율 100%로 우수한 참여도(충실성)를 보였으며, 주주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기본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책임성, 공정성의 관점에서 모든 사외이사가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충실성 (참석율)	기본역할	활동평가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책임성	공정성	기타	
박정찬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홍성일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조래형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황건호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3) 외부평가

외부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 외부평가 개요

해당사항 없음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해당사항 없음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미래에셋증권은 2015년 1월 28일 FY 2015 제 1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 제 21 조에 따라 홍성일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홍성일 선임사외이사는 2015년 3월 27일 개최한 FY 2015 제 3차 이사회 안건 중 “미래에셋” 브랜드 사용계약 승인 건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i)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우려에 대한 판단, ii)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 판단, iii) 상법상 이사의 임무위배 위험에 대한 판단, iv)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 위험에 대한 판단에 대해 법무법인에 질의하였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상기 질의사항을 포함하여 브랜드 사용계약 건이 관련 법규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아, 홍성일 선임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사외이사에 게 보고하였습니다. 상기 홍성일 선임사외이사의 대표적인 업무 수행 이외에도, 홍성일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간에 활발한 의사교류를 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각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사회 업무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사외이사가 경영진 및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를 위해 홍성일 선임사외이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2016.3.9.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일 기준)

- 부서명 : 경영전략팀
- 조직 : 1. 지배구조 일반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 참고
- 인원 구성 : 팀장(총괄) 1명, 담당간부 6명, 담당대리 5명, 기타 직원 3명
- 담당업무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안건자료 등 회의자료의 구비 및 관리
 -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필요자료 수집 및 제공
 - 사외이사 후보군 자격검증 등 관리업무 지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영정보 제공 등 제반 실무지원
 -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및 사외이사 연수 실시

- 사외이사 지원부서 업무 수행내역

- 2015년 3월 11일 FY 2015 제 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실무지원
 - i) 회의 소집 및 진행
 - ii) 후보자에 대한 사전 자격검증 (박정찬, 황건호 사외이사)
 - iii) 후보자 본인 소명 자료 포함 후보 추천 근거자료 구비
-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의자료의 작성 및 구비
- 사외이사 요청 자료에 대한 수시 제출
-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2015년 1월 및 2016년 2월 평가업무 진행)
- 사외이사 연수 실시
 - i) 순자본비율(증권사 자본건전성 지표) 조기적용 설명 : 2015.1.28. 시행

아.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안석교	08.5.30	13.6.7	61 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0.4 월~'10.5 월) 보상위원회('10.5~'13.6 월) 리스크관리위원회('11.5 월~'13.6 월)	선임사외이사('10.5 월~'13.6 월)'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13.3 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79.9 월~'11.2 월>,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02.8 월~'08.8 월>, 한국 국제학회 회장<'05.12 월~'07.2 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94.4 월~'01.5 월>, 한국 동북아 경제학회 회장<'99.2 월~'00.2 월>, 한양대학교 부설 중소기업연구소장<'85.1 월~'98.2 월>, 기획재정부 계획위원<'91.10 월~'92.12 월>, 외무부 정책자문위원<'89.1 월~'90.2 월>, 독일훔볼트재단 교환교수<'84.5 월~'85.4 월>
신진영	08.5.30	13.6.7	61 개월	리스크관리위원회('10.5 월~'11.5 월) 감사위원회('11.5 월~'13.6 월)		국민연금성과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12.4~>, 재무연구편집위원장<'12.1 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11.10 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05.3 월~>, 금융학회지 편집위원<'05.7 월~>, 국민연금평가보상위원회 위원<'07.06 월~'12.4 월>, 국민연금의결권

						<p>자문위원회 위원 <'07.06 월~'10.12 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09.8 월~'10.10 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06.7 월~'09.12 월>,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객원교수<'06.6 월~06.8 월></p>
노희진	10.5.28	15.1.6	55 개월	<p>보상위원회('10.5 월~'11.5 월) 감사위원회('11.5 월~'13.6 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2.4 월~'13.6 월) 리스크관리위원회('13.6 월~) 보상위원회('13.6 월~)</p>	<p>감사위원회 위원장('11.5 월~'13.6 월) 선임사외이사('13.6 월~)</p>	<p>한국재무관리학회 부회장, 사회적 기업학회 부회장<'13~>,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위원<'12~>,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 위원<'07~>, 투자자교육협회 자문위원<'05~>,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98.10 월~>, 한국증권학회 이사<'10~'11>,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09~'11>, LG 생활건강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05~'11>, 대우증권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06~'08>, 한국금융학회 이사<'02~'04>, 한국재무관리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00~'03>, World Bank Consultant<'99~'00>, 한국산업증권 국제업무실장, 뉴욕사무소장 등<'91.4 월~'98.7 월></p>
김정탁	10.5.28	14.1.31	44 개월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사회과

				(‘10.5 월~’13.6 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0.5 월~’13.6 월) 보상위원회(‘13.6 월~’14.1 월) 감사위원회(‘13.6 월~’14.1 월)		학대 학장<’13~>, 한국언론학회 회장<’12~>,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11~>, 기사형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10~>, 언론중재위원회 위원<’08~>,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85~>,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09~’12>,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02~’06>,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00~’01>
김우평	11.5.27	14.3.13	34 개월	보상위원회(‘11.5 월~’13.6 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3.6 월~’14.3 월) 감사위원회(‘13.6 월~’14.3 월)	감사위원회 위원장(‘13.6 월~’14.3 월)	SK 증권 고문<’10.5 월~>, SK 증권 이사회 의장 겸 SK(주) 최고경영위원<’08.5 월~’10.5 월> 증권예탁원 사외이사 겸직<’06~’08>, SK 증권 대표이사<’01.5 월~’08.5 월>, SK 생명 경영관리실장 겸 사장실장<’00.7 월~’01.5 월>, SK 생명 경영기획/인력담당임원<’97.5 월~’00.7 월>, SK(주) 금융·보험팀장<’97.1 월~’97.5 월>, SK(주) 회계부장<’92.2 월~’97.1 월>
박정찬	13.6.7	16.3.26	30 개월	리스크관리위원회(‘13.6 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3.6 월~’15.3 월) 보상위원회(‘15.1 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위원<’11~>, 신영연구기금 이사<’08~>, 연합뉴스 사장<’09~’13>, 연합뉴스 TV(뉴스 Y)사장 겸임<’11~’13>, 한국신문협회 감사

						<p><'09~'13>, 연합뉴스 미디어전략담당 이사<'06~'09>,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05~'09>, 연합뉴스 경영기획실장 <'06~'07>, 관훈클럽 총무<'05~'06>, 연합뉴스 편집국장 <'03~'05>)</p>
홍성일	14.3.14	16.3.13	21 개월	<p>보상위원회('14.3 월 ~) 감사위원회('14.3 월 ~)</p>	<p>감사위원회 위원장('14.3 월~) 선임사외이사</p>	<p>GK 파트너스 부회장 (비상근)<'12.6 월 ~>, 대우증권 사외이사<'10.6 월~'12.5 월>, IBK 증권 사외이사 <'09.6 월~'10.5 월>,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사장)<'03.6 월 ~'07.5 월>, 한국투자신탁 대표이사<'00.5 월~'03.5 월>, 신 공항공속도로 대표이사 <'00.3 월~'00.5 월>, 삼성증권 리테일 영업총괄 부사장<'99.2 월~'00.2 월>, 삼성증권 상품법인 및 기업금융본부장<'96.1 월 ~'99.1 월>,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92.11 월~'95.12 월>, 삼성중공업 경영기획실장 <'91.3 월~'92.11 월>,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감사팀장<'78.11 월~91.2 월></p>
조래형	14.3.14	16.3.13	21 개월	<p>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4.3 월~) 감사위원회('14.3 월 ~)</p>		<p>팬택(주) 비상임감사 <'07.4 월~>, 팬택엔큐리텔(주) 상임감사 <'02.1 월~'07.4 월>, 한국종합기술금융(주) KTB 영업본부장 <'01.1 월~'01.12 월</p>

						>, 한국종합기술금융 (주)KTB 자금 및 투자 조합 담당 (CFO)<'09~'00>, 한국종합기술금융(주) KTB 강남지점장 <'97~'98>,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 안 산지점장<'96~'97>, 한국종합기술금융(주) KTB 복권기금부장 <'94~'95>,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 자 금부장<'91~'93>, 한국종합기술금융(주) KTB 광주지점장 <'88~'90>
황건호	15.3.27	17.3.26	9 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15.3 월~) 리스크관리위원회 ('15.3 월~)		KB 금융지주 사외이 사<'12.3 월~'15.3 월 >, 서울대학교 경영대 학 초빙교수<'12.3 월 ~'14.2 월>, 한국금융 투자협회 회장<'09.2 월~'12.2 월>, 한국증 권업협회 회장<'04.2 월~'09.1 월>, 메리츠 증권(주) 대표이사(사 장)<'99.10 월 ~'03.12 월>, 대우증 권(주) 부사장<'96.3 월 ~'99.9 월>

10. 주주총회

가. 주주현황(2015.12.31 기준)

-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 114,285,871주
- 자기주식 현황 : 보통주 564,854주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 : 보통주 305,000주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현황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최대주주	미래에셋캐피탈(주)	41,411,156	36.23	
특수관계인	미래에셋컨설팅(주)	349,170	0.31	
	김경록	11,415	0.01	
	최현만	106,452	0.09	
	김병윤	95,093	0.08	
	정상기	40,774	0.04	
	변재상	57,875	0.05	
	공영국	270	0.00	
	이정호	26,677	0.02	
	이구범	100,964	0.09	
	조웅기	47,457	0.04	
	이만열	13,463	0.01	
	김상준	19,564	0.02	
	양준석	4,900	0.00	
	홍성일	2,153	0.00	
	김승건	7,431	0.01	
	류혁선	29,680	0.03	
	조한홍	49,551	0.04	
	박현민	134,296	0.12	
	오규택	12,636	0.01	
박형자	119	0.00		
자기주식	미래에셋증권(주)	564,854	0.49	의결권 없음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8,048,241	7.04	
일반(소액)주주	-	63,151,680	55.27	
합계		114,285,871	100.00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 3% 제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각 주주별 지분 3% 제한

- 주주명부 기준 1%이상 주주현황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미래에셋캐피탈(주)	41,411,156	36.23	
미래에셋증권 우리사주조합	8,048,241	7.04	
(주)전흥	3,538,661	3.09	
우리은행	2,842,435	2.48	국민연금 고유분
박정하	2,738,643	2.39	
신한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1,574,850	1.37	
에셋플러스순수주식1	1,350,204	1.18	

- 주주명부 기준 외국인 주주 지분율 합계 : 13.11%
- 회계연도 중 주주현황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소집결의일	2013.05.22	2014.02.25	2015.03.11
소집공고일	2013.05.22	2014.02.27	2015.03.11
개최일자	2013.06.07(금)	2014.03.14(금)	2015.03.27(금)
개최장소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20층 대강당		
이사참석	7명	7명	7명
소요시간	1시간 내외		
발언 해당 주주수	6명	6명	7명
발언 수	6건	6건	7건
발언 시간(평균)	3~5분	3~5분	3~5분
발언자 유형	주주 및 회사 임직원		
주주총회 소요비용	2천만원 내외(등기,용역,인쇄물,배당 통지내역 발송비용 등 포함)		

·영문 소집통지 등 공개·송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2013년

부의안건	결의 유형	의결정족수	찬성비율 (%)	반대비율 (%)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	보통	28,993,785	96.33	3.67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 권 유 (회사측)
제2호. 정관 변경	특별	28,993,785	100.00	0.00	
제3-1호. 사내이사 선임	보통	28,993,785	99.74	0.26	
제3-2호. 사외이사 선임		28,985,336	99.90	0.10	
제4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보통	14,671,137	100.00	0.00	
제5호.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	보통	28,829,562	99.95	0.05	
제6호. 퇴직공로금지급규정 제정	보통	28,824,855	79.98	20.02	

·명시적으로 제시된 반대의견 없음.

- 2014년

부의안건	결의 유형	의결정족수	찬성비율 (%)	반대비율 (%)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재무제표 승인	보통	29,794,570	99.77	0.23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 권 유 (회사측)
제2호. 정관 변경	특별	29,794,570	100.00	0.00	
제3-1호. 사내이사 선임	보통	29,794,570	97.95	2.05	
제3-2호. 사외이사 선임		29,794,570	99.65	0.35	
제4-1호.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 임	보통	14,976,887	95.03	4.97	
제4-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 임		15,283,766	100.00	0.00	
제5호.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	보통	29,769,187	99.88	0.12	
제6호. 퇴직공로금지급규정 개정	보통	29,794,570	79.90	20.10	

·명시적으로 제시된 반대의견 없음.

- 2015년

부의안건	결의 유형	의결정족수	찬성비율 (%)	반대비율 (%)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재무제표 승인	보통	30,609,141	98.63	1.37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 권 유 (회사측)
제2호. 정관 변경	특별	30,602,141	99.98	0.02	
제3-1호. 사내이사 선임	보통	30,609,141	98.16	1.84	
제3-2호. 사외이사 선임		30,609,141	99.92	0.08	
제4호.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보통	13,530,962	65.85	34.15	
제5호.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	보통	30,575,754	99.98	0.02	
제6호. 임직원퇴직연금부담금적용 규정 제정	보통	30,576,758	99.80	0.20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보통	30,602,141	99.75	0.25	

·명시적으로 제시된 반대의견 없음.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금융위원회로부터 접수한 공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행정지도 시행(’14.12.24)에 따라 ’15.1.2 지배구조 관리와 관련한 사내 각 부서에 동 내용을 통지, 안내하였으며, 모범규준 시행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적정 기일 내 공시하고자 합니다.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본 연차보고서의 다른 항목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사항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제시할 지배구조 관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첨부 1. 미래에셋증권 정관

정 관

제정 1999. 12. 02
개정 2000. 05. 31
개정 2000. 09. 21
개정 2004. 05. 28
개정 2005. 11. 03
개정 2006. 05. 26
개정 2007. 05. 25
개정 2008. 05. 30
개정 2009. 05. 29
개정 2010. 05. 28
개정 2011. 05. 27
개정 2012. 06. 05
개정 2013. 06. 07
개정 2014. 03. 14
개정 2015. 03. 27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이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MIRAE ASSET SECURITIES CO.,LTD.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아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신탁업
5. 투자일임업
6. 투자자문업

② 이 회사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아래의 업무를 겸영한다.

1. 보험대리점 업무 및 보험중개사 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3. 외국환 업무 및 외국환 중개업무
4. 전자자금이체업무
5.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6.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7.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8.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10. 신기술사업금융업

③ 이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영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2. 투자자 위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3.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4.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5.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6. 기업금융업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7.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8. 지급보증업무
9.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0.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1.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2.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
13.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④ 이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⑤ 이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업무 이외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와 기타 별도의 인가·허가·등록을 받아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사무소, 출장소 및 해외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ecurities.miraeasset.co.kr>)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며,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 9 조 내지 제 9 조의 6 에서 정한 1 종 내지 6 종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내가 되도록 한다.

제 9 조(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2%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의 2(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을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50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④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3(의결권제한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 종 종류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1. 이사의 선임·해임
2.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중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사항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존속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제 9 조의 2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4(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4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제 9 조의 2 제 5 항을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조건 및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보다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 나.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 미만인 경우
 - 다. 기타 적대적 M&A 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경우
- ④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9 조의 5(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5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을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조건 및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2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 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조건 및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2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 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9 조의 6(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6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종류주식의 전환, 전환기간의 연장, 종류주식의 상환, 상환주식 취득의 대가에 대해서는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제 9 조의 2 제 5 항, 제 9 조의 4 제 3 항, 제 4 항, 제 9 조의 5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을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와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

제 11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1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 163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55 조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차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 (상법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상법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한다)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8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 1 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자로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4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4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6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5 일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7 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회사는 사채의 종류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 356 조의 2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 55 조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9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 55 조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0 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1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3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

②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5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6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7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1 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33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과반수로 한다.

제 34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6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로 하며, 해당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그 임기를 정한다.

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 년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 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제 37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3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3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8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1 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 39 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4 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42 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3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4 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보상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41 조, 제 42 조 및 제 4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 45 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그 결의로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등)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별도의 규정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② 퇴직공로금 및 퇴직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45 조의 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6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4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자본시장법 제 26 조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47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8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9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4 월 1 일부터 익년 3 월 31 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4 년(16 기 사업년도)부터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0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1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52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53 조(주식의 소각) (삭제)

제 54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이익배당의 지급을 통지받은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이 경과되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5 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중 1 회에 한하여 10 월 1 일 0 시 현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2014 년(제 16 기 사업년도) 이후부터는 7 월 1 일 0 시 현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6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57 조(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상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 년 5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 년 11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제 22 조, 제 28 조 및 제 51 조의 개정내용은 2010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2. 미래에셋증권 이사회 규정

이사회 규정

제정 1999. 12. 02
개정 2001. 10. 23
개정 2003. 11. 12
개정 2005. 11. 09
개정 2006. 05. 09
개정 2007. 05. 25
개정 2008. 05. 13
개정 2009. 01. 14
개정 2010. 05. 28
개정 2011. 05. 27
개정 2011. 07. 13
개정 2012. 06. 05
개정 2013. 04. 25
개정 2014. 02. 25
개정 2015. 01. 28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구성 및 의무) ① 이사회는 등기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제 1 호>와 같다.

② 이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부의 사항의 집행결과 및 중요한 업무집행 현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 4 조(의장 및 소집권자)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한다.

-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의장 유고 시에는 상근하는 이사 중에서 직급, 위촉일(현 직급 위촉일을 말함),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제와 이유를 첨부하여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익월에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6 조(의안) ① 각 이사 및 부서장(또는 팀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별지 제 1 호 서식)을 회일 7 일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이를 종합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의안으로 확정한다.
- ③ 의안 중 사전열람을 요하는 안건은 간사가 이를 소집통지서에 첨부하여 각 이사에 회람하여야 한다.

제 7 조(소집통지)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5 일전까지 각 이사에 이사회 소집통지서 (별지 제 2 호 서식), 전자문서, 구두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 1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 조(관계자의 출석) ①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 9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준법감시인의 경우 이사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 1 호> 제 13 호 가목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사 전원의 동의로 결의한다.

1. 공적상 후보자는 최소 5 년 이상 상근한 자이어야 한다. 단, 계열회사에서 전입 온 자의 경우, 당사 상근기간이 최소 3 년 이상이고, 계열회사 상근기간을 통산하여 5 년 이상이어야 한다.
2. 공적상 후보자는 스톡옵션(2012.01.01. 이후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한함. 이하 동일)을 부여받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포기한 자는 공적상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제 10 조(결의사항의 집행) 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②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도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장과 협의하여 이를 우선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차회의 이사회에서 그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별지 제 3 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2 조(보관) 모든 의사록은 회차별 순위에 따라 편철하고 중요문서의 표식을 표시하여 이사회 부의 원안과 함께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3 조(간사) ① 이사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 ③ 간사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서(또는 팀)장이 된다.

제 14 조(위임)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종 위원회로 의사결정권을 위임 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 15 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의사결정을 위하여 상법과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장은 당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 구성, 심의대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 12. 0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10.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11. 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11. 0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05. 0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05.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05.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01. 1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 05. 28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 1 호의 개정내용은 2010. 05.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05.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07.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06. 0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04.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02.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01. 28 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1 호>

이사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에 관한 사항
 - 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2. 주식명의개서 대리인 지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유상증자
 - 나. 준비금, 잉여금 및 적립금의 자본 전입 (무상증자)
 - 다. 사채의 발행(주식관련 사채 포함)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라. 자기자본 25% 이상의 차입의 금융기관 차입 또는 기업어음 발행
(단, 만기 7 일 이하의 금융기관 차입은 제외)
 - 마. 자기주식 취득·처분(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해지 포함)
 - 바. 주식의 소각
 - 사.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식의 처리
 - 아. 배당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나. 이사의 순위 결정
 - 다. 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 있어서 대표자의 선임
 - 라.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마. 임원의 타 직업 종사의 승인
 - 바.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 사.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5.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사항
 - 가. 정관의 개정

나. 기본규정의 제·개정 및 폐쇄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 및 수익증권의 취득·처분
(단, 자기자본 10%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

나. 부동산의 취득, 처분, 건축

(단, 자기자본 10%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

8. 해외법인에 관한 사항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단, 동일 법인에 대한 총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미만인면서, 단일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2.5% 미만인 경우는 제외)

나. 해외현지법인의 그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단, 동일

법인에 대한 총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미만인면서, 단일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2.5% 미만인 경우는 제외)

9. 본사이전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경영상의 업무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결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 또는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12. 기타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가. 이사의 보수(급여,상여,퇴직금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 나.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사규)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

- 가. 표창징계규정에 따른 공적상 표창 심의

※ 상기의 규정 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최근사업연도말 부채총액 ±
최근사업연도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

<별지 제 1 호 서식>

이 사 회 의 안

제 호 : ○ ○ ○ ○ ○

1. 제안사유

2. 주요골자

<별지 제 2 호 서식>

이사회 소집 통지서

이 사

귀하

아래와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의사항 :

200 년 월 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의 장 인

<별지 제 3 호 서식>

이 사 회 의 사 록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 의 장 :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 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리고, 이사회 개최를 선언한 후 회의를 진행하다.

의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다음 의안의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다.

의안 및 결의사항

의 안 :

이상으로서 금일 이사회 의 부의안건에 관한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의사의 경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 날인하다.

200 년 월 일
미 래 에 셋 증 권 주 식 회 사

첨부 3.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제도 운영 규정

사외이사제도 운영 규정

제정 2010.05.28

개정 2011.05.27

개정 2012.06.05

개정 2015.01.28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및 사외이사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권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제 2 장 위원회 구성

제 4 조(구 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제 5 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다.

제 3 장 위원회 회의

제 6 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회일 5 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9 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제 10 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사외이사의 선임

제 13 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24 조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 25 조제 5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상법 제 382 조 제 3 항 및 제 542 조의 8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식견과 덕목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 14 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위원회 간사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법 제 29 조 제 6 항 및 상법 제 363 조의 2 제 1 항, 제 542 조의 6 제 1 항, 제 2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15 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같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4.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계법규 및 제 13 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 5 장 사외이사의 임기

- 제 16 조(사외이사의 임기)** ①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 제 17 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① 회사는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를 말한다)의 연 평균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단, 사외이사 총수가 5명 이상인 경우 회사는 매년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외이사의 역할 및 활동 등

- 제 18 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 19 조(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사외이사의 책임)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 1 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 참여 등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해당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회사가 제 5 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책임배상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이 일정 금액 이상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액의 최대 한도는 1 억원 이내로 한다.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기타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그 계열회사 및 해당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 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이사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 21 조(선임사외이사)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③ 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제 2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22 조(이사회내 위원회 연임 제한) ① 사외이사는 보상위원회 등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 1 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 23 조(사외이사 활동 내역 공시) 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익월 15 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지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 24 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 1 항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 1 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사외이사의 보수) ①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제 6 장에 따른 책임과 활동의 정도에 따른 보수(수당을 포함한다)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장 사외이사 활동의 지원

제 26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서(또는 팀)장이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 27 조 및 제 28 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2. 제 21 조제 3 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3.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4.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 27 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경영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1 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 28 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등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9 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9 장 공시 등

제 30 조(정기공시) 회사는 이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 제도 운영 현황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31 조(공시방법) 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제 32 조(규정 미준수에 대한 공시) 회사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5. 28. 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5.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 28.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집통지서

아래와 같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 200 년 월 일 시

2. 장 소 :

3. 부의안건

부의번호	안 건 명	비 고
제 1 호		
제 2 호		

200 년 월 일

의장 (인)

<별지 제 2 호 서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안

제 호 : ○ ○ ○ ○ ○

1. 제안사유

2. 주요골자

<별지 제 3 호 서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일 시 : 200 년 월 일 시

장 소 :

부의번호	안 건 명	결 과
제 1 호		
제 2 호		

총위원수 :

출석위원수 :

회의결과

위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하다

200 년 월 일

첨부 4. 미래에셋증권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제정 2007.5.25

개정 2012.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에 설치할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4조)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위원회는 당해 회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 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제8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9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권한위임)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간사 또는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

③일상감사사항 등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기간에 전결처리한 사안 중 중요사안은 정기위원회에서 보고한다.

④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제3장 회의

제11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종료후 1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회의소집을 못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부의사항)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소집 청구

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다.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라.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마.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계획의 수립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다.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라.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사.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아.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기타

-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사항
-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
-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라. 준법감사인의 해임 건의
- 마.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관련 협의
- 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 사.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2. 기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할 경우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6조(감사의 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 사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사항
-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준법감사인 관련 사항) ①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위원은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결과의 중요 내용을 보고 받는다.

1. 준법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2. 사고발생, 위규발생 가능 부서 및 지점 등에 대한 특별 검사
3. 기타 증권관계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업무

②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를 평가·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 등에게 요구한다.

제18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상근감사위원은 제16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및 그 이외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연간 검사계획 및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보조조직) ①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이하 "감사보조조직"이라 한다)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이하 "감사보조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③감사보조조직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④감사보조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내부감사 절차 등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조(감사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감사직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5. 미래에셋증권 보상위원회 규정

보상위원회 규정

제정 2010.03.16

개정 2010.05.13

개정 2012.01.19

개정 2012.07.24

개정 2015.03.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성과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감시하는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회사는 성과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감시하는 통합조직으로서,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조(구성) ①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위험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진행은 참석위원들이 중립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임기) 위원회의 사외이사는 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

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권한과 책임) ① 위원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2.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3. 보상체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보상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4.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5. 그 밖에 성과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③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보상제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심의 및 연차보상평가 실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회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구두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성립 및 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단,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설명 등) 위원장은 집행임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서(또는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임규정)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위원회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규 및 지침을 제·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 03.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 05.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01.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07.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03. 27부터 시행한다.

첨부6. 미래에셋증권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규정

제정 1999.12.01
개정 2000.07.01
개정 2002.06.01
개정 2002.10.10
전문개정 2003.11.12
전문개정 2005.07.01
개정 2005.11.09
개정 2006.05.09
개정 2006.11.29
개정 2008.04.16
개정 2009.01.14
개정 2009.03.13
개정 2010.01.14
개정 2013.02.27
개정 2014.07.15
개정 2015.01.28
개정 2015.09.09
개정 2015.12.21

제 1 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가 경영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위험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경영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및 적용우선순위)

-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자산운용 및 영업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파생상품 등을 통하여 장래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행위의 결과를 말한다.
2. '리스크'라 함은, 자산운용 및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변동가능성을 말하며, 리스크의 종류에는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리스크 등이 있다.
3. '시장리스크'라 함은,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리스크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4. '신용리스크'라 함은, 부도, 계약불이행, 신용등급의 하락 손실을 입게 되거나 기대이익을 상실할 가능성을 말한다.
5. '유동성리스크'라 함은,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채무를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시장의 거래부족이나 장애로 운용자산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6.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를 말한다.
7. '법률리스크'라 함은,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인식부족과 그로 인한 각종 규제 위반 또는 계약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8. '포지션'이라 함은, 거래담당자가 거래의 결과로써 취하고 있는 자산의 상태를 금액화한 것을 말한다.
9. '거래담당부서'라 함은, 주식, 채권, 선물·옵션, 장외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운용 및 인수업무, 중개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결제담당부서'라 함은, 거래담당부서의 거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확인, 결제, 회계처리 등을 주요업무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Book'이라 함은, 동일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집합체를 말한다.
12. '투자목적자산'이라 함은, 회사 고유자금을 활용하여 직접 주식과 채권, 부동산, 상품, 펀드, 선박, SOC, 대출채권, 파생상품, PEF, SPAC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 지급보증, CDS, 매입약정 등을 제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인수'라 함은 증권을 모집, 사모, 매출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4.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15. 'VaR'라 함은, Value at Risk의 약자로 정상적인 시장 여건 하에서 주어진 신뢰수준으로 일정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
16. 'Stress Test'라 함은, 비정상적 시장상황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의 손익 및 리스

크의 변화분을 측정하여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7. 'Credit Exposure'라 함은 Credit Event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노출금액으로서 Current Exposure와 Potential Exposure의 합계를 말한다.
18. 'Credit Event'라 함은, 부도, 계약불이행, 신용등급의 하락 등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19. 'Current Exposure'라 함은, 요인별리스크관리지침<별표7>에 따른 공정가격을 말한다.
20. 'Potential Exposure'라 함은, 만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노출금액의 통계적 추정치를 말한다.
21. '유동성갭'이라 함은, 약정 만기구간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배분한 현금흐름에 의거하여 유동성 자산에서 유동성 부채를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2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 시장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시장가격, 시장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금융회사, 정보통신사, 중개기관 등을 통하여 얻은 가격 또는 가격결정 모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가격을 말한다.
23. '영업용순자본비율'이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24. '자산부채비율'이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25. '리스크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담당부서, 결제담당부서, 리스크관리담당부서, 감사담당부서, 컴플라이언스담당부서 간에 종합적이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6. '관계회사'라 함은 '관계회사관리규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회사, 해외지사, 기타 출자회사를 말한다.
27. '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해당하는 증권 및 사채를 말한다.

제1-4조(리스크관리 목표 및 전략)

- ① 회사의 리스크관리목표는 경영상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장기적 성장을 도모함에 있다.
- ②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리스크관리조직체제 구축
 2. 리스크관리실무 및 절차 구축
 3.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4. 전사적 리스크관리문화의 형성

제 2 장 리스크관리 조직

제1절 리스크관리조직의 구성

제2-1조(리스크관리 조직의 구성)

회사의 리스크관리조직은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부문별 리스크관리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및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한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로 구성한다.

제2절 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회사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기능 수행 및 통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담당 부서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3조(구성)

- ①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진행은 참석위원들이 중립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권한과 책임)

- ① 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리스크관리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
 2. 리스크관리규정의 개정 심의
 3. 회사의 위험자본 배정
 4.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최저한도 설정
 5. 전사한도의 설정(VaR한도, 포지션한도, Stress Test 한도, 손실한도, Credit Exposure 한도, 유동성리스크한도, 운영리스크한도)
 6.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7. 위기대응방안의 승인 및 점검
 8. 회사의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변경시 필요한 경우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검토
 9. 리스크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관리정책, 절차, 각종 한도, 내부통제환경 등의 적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
 10. 업무별 리스크관리지침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인수, 투자목적자산 등 각종 거래업무 관련 승인
 11.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한 사항

제2-5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요사안의 발생 등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중 의결권이 있는 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자의 출석 등)

- ① 상근감사위원 및 준법감시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 회의록)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위원회 개최시 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회 관련 문서관리)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 및 서류, 회의록은 회차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단, 10년이 지난 문서는 문서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2-9조(심의·의결사항 보고)

- ① 위원회는 제2-4조 제2항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에 관하여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회사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실무적인 안건 및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리스크관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주요 현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리스크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1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진행은 참석위원들이 중립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2조(권한과 책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부문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2. 전사적 리스크 측정방법의 적정성 승인 및 점검
3.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점검
4. 리스크관리담당부서 기능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감독
5.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자기자본투자
6. 리스크관리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
7.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 승인
8. 북별(조직별) 리스크 한도(VaR 한도, 포지션 한도, Stress Test 한도, 손실한도, 민감도 한도)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한도의 설정 및 변경
9.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내지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한 사항

제2-13조(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주요사안의 발생 등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중 의결권이 있는 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14조(운영위원회 회의록)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운영위원회 개최시 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5조(운영위원회 관련 문서관리)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 및 서류, 회의록은 회차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단, 10년이 지난 문서는 문서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2-16조(심의·의결사항 보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에 관하여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4절 소위원회

제2-17조(부문별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운영위원회는 회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분야별 전문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설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장 및 위원구성
 2. 소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3. 위원회 업무의 위임 여부 및 위임범위
 4. 소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 ③ 소위원회 위원은 담당부서별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 이상의 직급인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2-18조(소위원회의 구성)

-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진행은 참석위원들이 중립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9조(소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 ① 소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1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된다.
- ② 상정안건의 실무부서는 회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소집안건의 주요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③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중 의결권이 있는 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의 의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20조(심의·의결사항 보고)

소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에 대한 주요 내역을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1조(소위원회 회의록)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소위원회 개최시 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2조(소위원회 관련 문서관리)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소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 및 서류, 회의록을 회차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단, 10년이 지난 각종 문서는 문서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2-23조(금융상품소위원회)

- ①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에 따른 고객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 의무 준수 등의 사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금융상품소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금융상품소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판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판매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판매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판매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판매
 6. 파생결합증권 판매
 7. 신규상품의 위험등급 결정
 8. 퇴직연금 신규 운용방법 결정
 9. 기타 CRO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③ 제2항 6호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및 주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취급의 타당성 심의
 2.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 검토
 3.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관련 계약서 및 부속서류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
 4. 기타 회사의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관련 중요한 사항의 검토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승인된 상품과 운용형태가 동일한 경우 제1호, 제5호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통보로,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는 CRO의 합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4조(투자심사소위원회)

- ① 투자, 인수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투자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투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PI 의사결정
 2. 주식 및 채권 등 각종 유가증권의 인수
 3. 기타 IB 영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2-25조(신탁업소위원회)

- ① 신탁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신탁업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신탁업소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신탁부문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지침 관련 업무
 2. 신탁상품별 운용목적, 규모 등 신탁상품관리에 대한 사항
 3. 신상품 취급 여부
 4. 컴플라이언스 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6조(가치평가소위원회)

- ① 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사채 등)을 포함한 각종 금융상품의 적정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가치평가소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가치평가소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가정 및 모형
 2.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시장변수에 관한 사항
 3. 가치평가와 관련된 매뉴얼의 제,개정 및 폐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절 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제2-27조(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설치)

회사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과 의결사항 집행, 각종 리스크의 측정, 관리, 통제 등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상설기관으로 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를 설치·운영한다.

제2-28조(구성 및 운영원칙)

- ① 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거래담당부서 및 결제담당부서 등 회사의 타 업무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된 사용공간, 리스크관리시스템 및 보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임직원은 거래담당부서 및 결제담당부서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③ 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임직원은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회사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인력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분 및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9조(CRO의 권한과 책임)

CRO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총괄
2. 리스크관리 정책 시행, 자원 배분 검토,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등

제2-30조(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업무)

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지시사항 집행
2. 이사회,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검토 의견의 제시
3. 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4.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지침)의 관리 및 보관
5. 영업용순자본비율, 자산부채비율의 산정 및 대내외 보고
6.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인수업무 등 각종 거래업무관련 검토 및 보고
7.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8. 리스크 측정방법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보고
9. 결제담당부서의 가격평가모델의 독립성 및 정확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승인
10.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리스크 변수의 변동성 사용기준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안정성 평가기준의 사전 검토 및 보고
12.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측정 방법의 사전검토 및 보고
13.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의 마련 및 보고
14. 리스크관련 제규정 위반시 보고
15.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배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리스크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의 수립 및 보고
16. 이사회, 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 관련 사항의 보고
17. 한도 신설 및 변경 요청의 적정성 평가
18. 신규사업진출, 신상품개발, 자회사 출자 등 주요 리스크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19.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의 검토 및 보고

②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전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1조(권한)

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규의 해석에 있어, 1차적인 해석권한을 가진다. 단, 관련부서에서 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관리규정 제 8조에 따른다.
- ③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규정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과 준법감시인에게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신규업무 및 상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리스크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상 필요한 경우 신규업무 및 상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거래담당부서 및 결제담당부서

제1절 거래담당부서

제3-1조(운영원칙)

- ① 거래담당부서는 결제담당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거래담당부서는 거래체결 후 해당 거래내역을 적시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리스크관리담당부서 및 감사담당부서, 컴플라이언스담당부서, 결제담당부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성 있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거래담당부서에서는 거래정보 입력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일일 점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리스크관리담당자의 지정)

- ① 거래담당부서 부서장은 부서내에 책임자급 리스크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거래담당부서내 리스크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거래담당부서 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점검
 - 2. 리스크관리정책 준수여부 확인 및 각종 한도 모니터링
 - 3. 거래기록의 유지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대한 보고

제3-3조(거래시 사전절차)

- ① 거래담당부서는 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 등 위험성이 높은 거래 또는 업무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신규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담당부서와 거래절차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거래담당부서는 전항의 거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거래의 성격, 목적, 손익구조, 거래상대방 정보 및 거래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검토서류를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컴플라이언스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거래담당부서에서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규의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리스크관리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부외거래의 기록·유지)

거래담당부서에서는 파생상품거래, 기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지체 없이 결제담당부서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결제담당부서

제3-5조(운영원칙)

- ① 결제담당부서는 거래담당부서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 등 회사의 타 업무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결제담당부서 부서장 및 담당직원은 거래담당부서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③ 결제담당부서는 거래와 관련하여 신속, 정확, 안전하게 사후 처리 및 기록할 책임을 지며, 손익평가의 정확성 유지, 거래확인, 필요서류의 교환 및 적절한 보관상태 유지,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등에 있어, 거래담당부서에 대한 지원 및 견제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 결제담당부서는 거래내역 및 결제업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거래담당부서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결제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규의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리스크관리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손익산정 및 포지션평가)

- ① 결제담당부서는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및 기타 거래로부터 발생한 포지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고, 승인된 평가방침 및 평가절차를 적절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결제담당부서는 각 자산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정가액 평가시, 매일 일관된 원칙하에 거래담당부서와 독립된 가격 및 평가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각의 가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결제담당부서는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익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매일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리스크관리실무

제4-1조(업무별 리스크관리)

- ① 운영위원회는 각종 업무별, 상품별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해야 한다.
- ②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1항의 지침의 적정성에 대해 연1회 이상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4-2조(요인별 리스크관리)

- ① 운영위원회는 리스크 요인별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해야 한다.
- ② 1항의 지침에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의 리스크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 ③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1항의 지침의 적정성에 대해 연1회 이상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4-3조(한도관리)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적절한 한도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과도하게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도관리방안을 지침으로 정해야 한다.

제4-4조(한도 설정 및 관리 절차)

- ①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전체의 위험자본을 설정하고 설정된 위험자본 내에서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한도 등의 세부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리스크 관리담당부서에서는 한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정된 한도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거래담당부서가 요청한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한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각종 한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리스크관리시스템)

- ①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지침으로 정해야 한다.
- ②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대상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로 한다.

제4-6조(지침의 제정)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을 제·개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은 위원회의 승인 후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 한다.

제4-7조(규정준수 감독)

거래담당부서, 결제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의 부서장은 담당직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부담한다.

제 5 장 리스크 보고

제5-1조(보고원칙)

- 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거래담당부서 및 결제업무부서와 독립적으로 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거래담당부서와 결제담당부서간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인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보고방법)

- ① 보고방법은 문서화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일상적인 보고의 경우 리스크관리시스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긴급을 요하는 보고사항은 구두, 유선,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적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보고 종류 및 주기)

- ① 정기보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별: Book별 포지션, 한도현황, 손익 등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
 2. 월별: 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의결현황, 운용현황(한도초과내역, 포지션 증감, 한도 변경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
- ② 수시보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환경 또는 시장상황 급변시 회사의 리스크 노출 현황
 2. 위기사항 발생시 그 내용
 3. 기타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제 6 장 내부통제 및 감사

제6-1조(내부감사)

- ① 감사는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거래담당부서, 결제담당부서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업무현황 및 규정 준수여부, 리스크의 관리 및 평가방법의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다.

제6-2조(준법감시인의 역할)

-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위반, 부정행위 등 운영리스크 및 법률리스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등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른다.

제6-3조(규정위반시의 조치)

CRO는 리스크관련 규정 및 지침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각종 한도의 축소
2. 기존 포지션의 해지 및 신규포지션의 설정 제한

7장 기타 사항

제7-1조(관계회사의 리스크관리)

- ① 회사는 관계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회사의 리스크관리는 기획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 ③ 회사는 관계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범위
 2. 관리대상 자산
 3. 관리절차 및 사후관리
 4. 보고 및 통제체계
 5. 보고양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7-2조(위험조정성과평가)

- ① 거래담당부서의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운용성과와 비용 및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거래담당부서에 귀속된다.

- ② 회사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성과에 대하여 리스크를 감안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한도배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성과측정기준, 측정방법, 측정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과 측정결과 검증을 위해서 관련부서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 ④ 회사는 거래담당부서의 손익과 연동하여 리스크관리담당부서, 감사담당부서, 컴플라이언스담당부서, 결제담당부서의 성과측정 및 보상체계를 책정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7. 미래에셋증권 경영위원회 규정

경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3.11.12
개정 2006.05.09
개정 2007.05.25
개정 2007.07.12
개정 2008.05.13
개정 2009.01.14
개정 2009.08.20
개정 2011.05.27
개정 2011.07.13
개정 2012.06.05
개정 2012.10.24
개정 2013.01.15
개정 2015.01.28
개정 2015.03.27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한 경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권한 및 기능) ① 경영위원회는 관계법령, 정관, 이사회규정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경영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상에 규정된 이사회결의사항을 제외한 회사 제반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행사한다.

③ 경영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제 1 호>와 같다.

제3조(선임 및 구성) 경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선임한다.

제4조(의장) ① 경영위원회의 의장은 이사회결의로 선임한다.

② 경영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다.

제5조(소집) ① 경영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경영위원회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1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 구두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영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감사위원의 출석) 감사위원은 경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 조(관계자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을 경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결의) ① 경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경영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경영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경영위원회 부의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위원은 전항의 위원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9 조(간사) ① 경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서(또는 팀)장이 한다.

제 10 조(부의 절차 등)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의안(별지 제 2 호 서식)을 작성, 결재를 득한 후 회의의 3 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지) 경영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추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경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경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의사록) 경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별지 제 3 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1.12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정으로 인하여 발효되는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5. 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5.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7. 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05.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01. 1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08.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05.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07.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06. 0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10.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01. 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01.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03. 27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영위원회 부의사항

1. 경영의 기본방침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지배나 참여 목적인 타법인이 발행한 주식(주식관련 사채 포함)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처분으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1) 자기자본 10%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국내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 2) 자기자본 2.5%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나. 자산재평가

다. 인허가 업무 (단, 이사회의 부의사항은 제외)

라. 자기자본 5% 이상 자기자본 25% 미만의 금융기관 차입 또는 기업어음 발행

(단, 만기 7 일 이하의 금융기관 차입은 제외)

마.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

바. 복지기금의 출연

사.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출

아. 자기자본 10% 미만의 자금의 소요되는 부동산의 취득, 처분, 건축
(단, 건 당 30 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단, 건 당 30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차.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장기 계획

카. 주전산기의 선정, 도입, 임차, 리스, 처분

타. 연간 예산의 편성

파. 국내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쇄,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하.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경영진으로서 부문대표 선임 또는 해임

3. 기타 사규에 의하여 경영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상기의 규정 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최근사업연도말 부채총액 ±
최근사업연도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

<별지 제 1 호 서식>

경영위원회 소집통지서

아래와 같이 경영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 200 년 월 일 시

2. 장 소 :

3. 부의안건

부의번호	안 건 명	비 고
제 1 호		
제 2 호		

200 년 월 일

의장 (인)

<별지 제 2 호 서식>

경영위원회 의안

제 호 : ○ ○ ○ ○ ○

1. 제안사유

2. 주요골자

<별지 제 3 호 서식>

경영위원회 의사록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 의 장 :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경영위원회 의장 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 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경영위원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리고, 경영위원회 개최를 선언한 후 회의를 진행하다.

의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다음 의안의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다.

의안 및 결의사항

의 안 :

이상으로서 금일 경영위원회의 부의안건에 관한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 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의사의 경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 날인하다.

200 년 월 일
미 래 에 셋 증 권 주 식 회 사